

關係次官會議資料

1999. 12. 4(土)

青少年保護 特別對策

關係部處合同

(대통령비서실, 국무조정실, 청소년보호위원회,
행정자치부, 교육부, 문화관광부, 보건복지부·
식품의약품안전청, 노동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서울특별시)

- 目 次 -

1. 青少年保護 特別對策(綜合)	3
2. 青少年有害環境 淨化 및 改善 對策(青少年保護委員會) ...	19
3. 青少年保護 特別對策(行政自治部)	25
4. 青少年善導를 위한 學生指導 綜合對策(教育部)	33
5. 青少年 利用施設·空間擴充 및 善導·保護對策(文化觀光部) ..	45
6. 青少年有害 食品接客業所 不法營業對策	55
(保健福祉部·食品醫藥品安全廳)	
7. 青少年 失業對策 推進計劃(勞動部)	63
8. 青少年問題 綜合對策(大檢察廳)	71
9. 青少年有害環境 團束對策(警察廳)	85
10. 서울 青少年保護 特別綜合對策(서울特別市)	95

青少年保護 特別對策(綜合)

- 목 차 -

I. 青少年問題의 現況과 實態	7
II. 青少年問題 改善을 위한 政策課題	9
III. 青少年保護 特別對策 推進	10
□ 主要內容	10
□ 推進日程	14
□ 機關別 措置 및 協調事項	16

推 進 背 景

- ◆ 最近 華城 靑少年修鍊院 火災, 仁川 호프집 火災, 援助交際 等 잇따른 靑少年關聯 事件·事故는 우리 社會의 構造的 脆弱性的 한 斷面을 露呈하는 것으로,
- ◆ 靑少年 問題에 대한 國民的 關心은 政府의 단호하고 分명한 長短期 對策을 期待하고 있는 실정임.
- ◆ 따라서 既存의 靑少年 施策을 일대 轉換하는 '長期 靑少年 對策'을 樹立·公表함과 아울러, 年末年始를 前後하여 靑少年 有害環境 解消를 위한 特단의 措置가 必要함.

I. 靑少年 問題의 現況과 實態

吸煙, 飲酒, 家出 等 靑少年 脫線行爲의 急增

- 高3 男學生의 吸煙率이 41.6%로서 世界最高 水準
 - 미국 28.2%, 영국 20.5%, 일본 26.2% ('97. 세계보건기구)
- 年間 10萬名의 家出 靑少年 中 상당수가 遊興業所로 流入

靑少年 有害環境이 급속히 擴散되어 接觸機會가 日常化

- 현재 全國에 1만8천 개소의 遊興飲食店, 2만5천 개소의 단란酒店, 2만9천 개소의 노래방, 3천 개소의 비디오 감상실이 住居地域 등에 散在
- 靑少年의 有害 刊行物 接觸經驗은 포르노 잡지 39.7%, 포르노 비디오 54%, 인터넷 음란물 77%

□ 靑少年이 利用할 施設・空間과 프로그램의 不足

- 餘暇時間을 성인업소 출입, 음주, 흡연 등으로 낭비
- 公共의 靑少年 施設・空間의 不足과 私設施設의 安全問題로 건전한 靑少年 校外活動 微弱
 - 화성 “씨랜드 청소년수련원” 화재이후 청소년 수련활동 위축

□ 靑少年 問題 解決을 위한 學校教育의 限界

- 學生에 대한 校外生活 指導 限界
 - 특히, 교사의 교외생활지도시 유해업소 단속은 거의 불가능
- 학교폭력, 집단 따돌림 등 校內 問題가 심각
 - 집단 따돌림 피해율 : 남학생 28.2%, 여학생 20.3%
 - 학교폭력 피해 학생수 : 187,680명('98. 교육부)

□ 靑少年關聯 政策意志의 未洽 等

- 民選自治制 出帆後, 地方自治團體의 有害業所 團束實績 急減
 - '94년 업소당 3.8회 단속 ⇒ '98년 업소당 1.3회 단속
- 人力不足 및 有關機關間 協調體制 未洽
 -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1,300개소의 유해업소 관리
 - 유해업소 단속 등과 관련한 관계기관간 협조 미흡
- ※ 靑少年 保護와 育成業務가 靑少年保護委員會와 文化觀光部로 二元化
 - 교육·보건복지·노동부 등 18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청소년 업무 추진

II. 靑少年問題 改善을 위한 政策課題

持續的인 靑少年 有害環境 解消對策의 必要

- 靑少年 有害環境에 대한 지속적인 團束體制 確立
 - 지역별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‘合同團束班’ 구성·운영
- 處罰規定의 強化로 法執行의 實效性 확보
 - 未成年者 유흥접객원 고용시 許可取消 및 영업소 閉鎖 등

靑少年이 利用할 施設과 놀이空間 擴充

- 올림픽 公園등 既存 施設을 靑少年 놀이空間으로 적극 활용
 - 학부모, 시민단체의 시설운영 참여 및 자원봉사 유도
- 公共部門의 靑少年 餘暇施設의 대폭 擴充 및 民間資本 參與 講究

各級 學校의 全人教育 機能 強化

- 人性教育 프로그램 확대와 相談敎師 확대 配置
- 靑少年團體 등 民間組織을 적극 활용하는 청소년 체험교육 확대

地域社會와 市民이 함께하는 ‘靑少年 運動’의 擴散

- 靑少年保護委員會가 主管하는 ‘新 家庭教育 運動’ 적극 推進
- 地域單位의 ‘靑少年 有害環境 監視團’ 등 民間 自律活動 支援

中·長期 ‘靑少年 綜合對策’의 樹立 등

- 實效性있는 中·長期 「靑少年 綜合對策」 수립 推進
- 各 部處에 散在되어 있는 청소년 保護·育成 기능의 再調整 等

Ⅲ. 靑少年保護 特別對策 推進

主 要 內 容

① 地域單位的 「民官合同團束」 活動 展開

- 靑少年보호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,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 추진 -

○ '99. 12月부터 靑少年 有害業所에 대한 全國的인 一齊 團束實施

- 市民團體와 地域住民, 敎師, 學父母, 有關機關이 함께 참여하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단위 '民·官 合同團束班'을 常設 運營

- 地方自治團體가 主管하고, 中央政府 및 有關機關에서는 人力, 裝備, 豫算, 司法措置 등 적극 支援

○ 檢察·警察은 自體計劃에 따라 集中團束 실시

- 특히 지역별 '靑少年對策協議會'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 적극 가동

○ 적발된 靑少年 有害事犯에 대하여는 刑事處罰, 業所閉鎖 등 強力히 措置 하고 일일점검 등 철저한 事後管理

○ 團束班 活動에 대한 弘報 및 住民申告制 운영(申告褒賞金 支給)

○ 地方自治團體의 靑少年 有害業所 團束 및 整備實績 評價制 실시

- 시민단체와 행정자치부, 靑少年보호위원회 '중앙점검단' 공동주관

- 평가결과 우수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 및 지방교부세 지원 강구

< 摘發業所에 대한 措置 >

- 靑少年利用不法行爲者는 폐가망신한다는 社會的 共感帶가 형성되도록 強力處罰 -

○ 業 主

- 형사처벌 원칙(검찰·경찰)
- 업주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현행범으로 즉시 연행조치
- 업주가 현장에 없는 경우는 관할경찰서에 인계, 책임조치

○ 業 所

- 무허가 업소 : 폐쇄·봉인, 게시물 게첨 및 간판 철거
- 영업정지중 영업업소 : 허가취소
- 기타업소 :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 부과
- 무허가·불법용도변경 건축물 : 단전·단수
- 소방법 위반 : 고발 및 영업정지
- ※ 강력한 세무조사 병행 실시

○ 建物主

- 불법용도 변경의 경우 :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
- ※ 2종 근린생활시설에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경우 등
- 재산세·종합토지세 증과, 취득세 법정상한선까지 추징
- 소방법규 위반 : 고발 및 개수명령

② 青少年 有害環境 解消를 위한 制度改善方案 檢討(例示)

- 所管 部處別로 조속히 法令改正 등 措置 -

- 青少年利用 新種業所(콜라텍 등)의 制度化
- 노래방 酒類販賣·接待婦 고용, 비디오 等級違反 등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刑事處罰 규정 신설
- 未成年者 不法雇傭, 酒類販賣 業所 등에 대한 處罰規定 強化 (과징금 처분, 수차례 위반시 허가취소 ⇒ 1회 적발시 허가취소)
- 許可取消時 同一場所에 類似業種 新規許可 制限 (유사업종으로 변경 가능, 동종업종 6개월간 제한 ⇒ 1년간 유사·동종업종 허가 제한)
- 青少年 雇傭·出入,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營業停止 및 許可取消 만을 행하고 과징금 대납 不許
- 不法業所에 대한 斷電·斷水 근거 마련
- 青少年保護年齡을 '19세 미만'으로 統一 (영화진흥법, 음비게임법, 공연법)
- 出入禁止業所를 출입한 청소년에 대한 敎育命令制 도입방안 검토
- 호프집·소주방·오락실 등 青少年 出入業所에 대한 消防·防火 施設基準 강화(소방·방화시설 완비증명 대상에 포함)
- 青少年通行禁止區域 (Red Zone) 운영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

③ 靑少年 놀이空間 및 프로그램 擴充

- 기존의 施設을 最大한 活用, 健全하고 재미있는 靑少年 空間 확보 -

○ 學校 運動場, 市民會館, 文化·體育施設 등 公共施設을 靑少年에게 전면 개방

- 청소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, 컴퓨터휴게실 등 설치

○ 公園, 公共敷地 등에 농구대, 간이축구장, 롤러브레이크장 등 靑少年 選好 施設 設置 및 靑少年 專用空間(Green Zone)확충

○ 靑少年에 대한 公演場, 映畫館, 文化施設 入場料 대폭 割引

- 청소년 무료·할인,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강구

○ 學父母·靑少年 團體의 시설운영 참여, 自願奉仕 유도

○ 生活圈 단위의 靑少年 修練施設 등 대폭 擴充

※ 靑少年 施設·空間 擴充을 위한 中·長期 綜合對策 별도 수립

④ 靑少年政策 機能의 統合·調整 方案 講究

○ 18個 部處로 分散되어 있는 靑少年 業務에 대한 統合·調整 機能 必要

○ 行政自治部 主管으로 機能調整 方案 마련 (2000년 3월까지)

推 進 日 程

① ‘青少年保護 特別對策會議’ 開催

- 參 席：青少年 關聯部處의 次官級(主管：國務調整室長)
 - 차관급(11)：행정자치부·교육부·문화관광부·보건복지부·노동부·건설교통부·기획예산처 차관, 대검찰청 차장, 경찰청장, 식품의약품안전청장, 서울시 행정1부시장
 - 기 타(2)：청소년보호위원장, 대통령비서실 정책2비서관
- 內 容：‘青少年保護 特別對策’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協調方案
- ※ 12. 4(토) 개최,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심의(필요시 수시 개최)

② 青少年保護 特別對策 確定：12월초

- ‘青少年保護 特別對策會議’에서 확정후, 國務會議에 보고
- 推進狀況은 수시로 特別對策會議 및 國務會議에 보고

③ ‘青少年保護 特別對策點檢會議’ 運營

- 主要 部處 青少年業務 擔當局長이 참석하는 實務會議 운영
(主管：大統領秘書室 政策2秘書官)
 - 국무조정실, 행정자치부, 교육부, 문화관광부, 보건복지부, 노동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식품의약품안전청, 청소년보호위원회, 서울시
- 部處間 協調事項 協議·調整
- 部處別 ‘青少年保護 特別對策’ 추진실적 點檢 및 評價(월1회 개최)
- ※ 11. 22(월) 제1차회의 개최, 부처별 대책보고 및 협조사항 논의

4 特別對策 推進狀況 管理

- 12월초에 關聯 中央行政機關 및 市·道에 추진방침 시달(國務調整室)
- 12월중순까지, 각 中央部處(廳) 및 市·道에서는 추진 專擔班 구성, 細部推進計劃 樹立 및 推進
 - 특히, 행정자치부. 대검찰청에서는 지역별 추진상황 파악 및 민관 합동단속활동 지도
- 法令 制·改正 등 制度改善事項에 대하여는 조속히 完了될 수 있도록 각 部處別로 黨政協議 등 적극 推進
- 靑少年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擴充을 위한 長·短期對策 推進
 - 기존시설 활용한 공간 확보 : 2000년 3월까지
 - 새로운 시설·공간 확충 : 조속한 시일내 중·장기계획 수립 추진
- 靑少年保護委員會 『中央點檢團』('98. 7월 구성)을 正常化하여 중앙 및 市·道別 추진상황 지속 點檢·管理
 - 추진실적 제출(익월 10일까지)
 - 행정자치부는 시·도 실적을 종합하여 제출(시·도는 시·군·구 실적 종합)
 - 기타 부처(청)은 소관별 추진실적을 중앙점검단에 제출

5 留意事項

- 관련 部處(廳)와 地方自治團體에서 현재 추진중인 合同 團束 등 靑少年 保護 施策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, 금번 방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強化推進
- 기타 部處에서도 靑少年保護 特別對策이 實效性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支援 措置

機關別 措置 및 協調事項

部 處(廳)	推 進 事 項 (協 調 機 關)
行 政 自 治 部 (自 治 團 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단체단위 청소년 유해사범 민·관 합동단속반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합동단속반요원 차출(교육부, 경찰청) - 청소년유해사범 형사처벌(대검찰청, 경찰청) - 단속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검토(대검찰청) - 단속활동 방해자 처벌(대검찰청, 경찰청) ○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철저 및 결과이행 확인점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행정·형사처벌 철저(대검찰청, 경찰청) - 불법업소 폐쇄, 단전·단수 및 세무조사 실시(국세청, 한전) - 불법업소 건물주 처벌 ○ 청소년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합동점검반 구성·운영 ○ 청소년등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제도 개선(소방법 등 개선) ○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운영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강구 ○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·정비실적 평가(청소년보호위원회) ○ 청소년정책 기능의 통합. 조정방안 마련
教 育 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교외 학생생활지도 강화(유관기관 합동) ○ 청소년 건전놀이 활성화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활용방안 강구 ○ 수능 및 고입전형이후 특별면학프로그램 편성·운영 ○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유해업소 정비 및 단속강화 (검찰청, 경찰청) ○ 인성교육 강화대책 추진 ○ 학교상담실 운영 내실화 ○ 학업능력부진아, 가출·중퇴경험자 등을 위한 대안교육 확대 ○ 각급학교 시설 청소년개방방안 강구

部 處(廳)	推 進 事 項 (協 調 機 關)
文化觀光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 문화예술·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○ 연말연시 청소년 비행예방대책 추진 ○ 청소년 선도·보호 및 상담대책 추진 ○ 신종업소(콜라텍 등) 제도화 추진(보건복지부) ○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제고방안 강구 (행정자치부, 교육부) ○ 노래방 주류판매, 접대부 고용, 비디오 등급위반 등 음란·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행위 형사처벌 규정 신설 ※ 중장기 청소년 시설·공간 확보계획 수립
保健福祉部 (食品醫藥品安全廳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접객·공중위생업소 청소년보호 위반행위 벌칙강화 (관계법령 개정) ○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강화 ○ 식품접객·공중위생 영업자 특별교육 실시 ○ 신종업소(콜라텍 등) 제도화(문화관광부 등)
勞 動 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유해업소 알선행위 금지대책 추진(자치단체) ○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철저 ○ 청소년 고용 촉진대책 수립·시행
建設交通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물 관리 강화대책 추진

部 處(廳)	推 進 事 項 (協 調 機 關)
國 稅 廳	○ 불법영업 등 적발업소 세무조사 실시
大 檢 察 廳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 운영 강화 ○ 청소년유해 및 안전유해업소 위반업주 및 책임자 강력처벌 ○ 단속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(법무부) ○ 단속활동 방해 및 폭력행위자 처벌 ※ 지방검찰청(지청)별 청소년대책협의회를 통한 지원
警 察 廳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풍속업소 불법영업 특별단속 실시 ○ 불법영업 적발업소 사후관리 철저 ○ 비행청소년 선도·보호활동 강화 ○ 경찰 - 업주간 유착관계 근절대책 ○ 지역별대책협의회 적극 참여
靑少年保護委員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별도정원(15명) 조치(행정자치부) ○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 단속·정비실적 평가(행정자치부) ○ 지역별 대책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 운영(검찰청) ○ 「성인유해업소특정지역 집중화」 방안 추진 ○ ‘新가정교육 운동’ 전개 ○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강화(기획예산처) ○ 청소년보호 연령 법규정 통일(문화관광부) ※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추진상황 종합관리

青少年有害環境 淨化 與 改善 對策

青少年保護委員會



I. 現況 및 問題點

□ 飲酒·吸煙, 家出 등 靑少年 脫線行爲의 급증

- 高3 靑소년의 吸煙率 增加(41.6%)
- 가출靑소년의 상당수 遊興業所 유입(연간 약 10만여명)

□ 靑少年有害環境의 급속한 擴散과 接觸機會의 日常化

- 遊興酒店, 노래방 등 각종 靑少年有害業所의 주택가, 학교지역내 급속 유입
- 포르노 잡지·비디오 등 有害媒體物 接觸遮斷 미흡

□ 靑少年關聯 組織의 人力不足 및 有關機關間 協調體制 未洽 등

- 靑소년보호업무 專擔部署·人力 不足 및 豫算支援 미약
 - 담당공무원 1인당 평균 1,300여개소 유해업소 관리
- 유해업소 團束時 有關기관간 협조 未洽
- 民選自治制 출범후 유해업소에 대한 消極的 團束

II. 推進對策

□ 地域單位 ‘民官合同團束’ 活動 전개

- 靑少年保護特別對策 시달(국무조정실)
-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「民官合同團束班」 운영
- 단속활동의 持續的 展開(별도 지침시까지)

□ 靑少年保護 ‘中央點檢團’ 運營 활성화

- 任 務
 - 중앙차원의 종합단속 및 정화활동 계획 수립·시행
 - 청소년보호 특별대책 및 지역별대책협의회 추진상황 점검
 - 기타 기존 부여업무 계속 추진
- 運 營
 - 관계부처와 협의, '99. 12월중 재구성
 - 2000. 1월부터 본격 운영
 - ※ 별도 정원(15명)으로 관리, 상설 운영토록 조치(행정자치부)

□ 地域別青少年對策協議會 運營 활성화

- 地域別青少年對策協議會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 가동
- 별도 지침시달시까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一齊 團束 전개
- 협의회 運營實績을 정기적으로 自體 評價(매 분기 1회)
- 中央點檢團에 운영 결과 報告(익월 10일까지)

□ 지역단위 ‘青少年有害環境監視團’ 活動 지원

- 青少年有害環境監視團의 자율적 감시 기능 提高
 - 청소년보호캠페인등 홍보·계도활동에 적극 참여
 - 우수 감시단에 대한 활동장려금 지원
 - 우수 활동사례 발굴, 전파 및 포상
- 青少年有害環境監視團의 活動 強化
 - 지역별청소년대책협의회 주관의 민관합동단속반에 적극 참여
 - 감시단원 자질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감시단원 교육강화
 - *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실시

□ ‘成人遊興業所 特定地域 集中化’ 方案 추진

- 유흥업소 新規許可는 가칭 「遊興特區」로 制限하고, 他地域에는 일체 新規許可 禁止

- 既存 業所는 10年 동안 保障하되, 그 이후 移轉 措置 促求
- 制度 導入을 위한 研究用役 및 外國實態調査 실시(2000년)
- 公聽會開催등 의견수렴을 통한 制度化 추진

□ 「新 가정교육운동」 推進

- 가정교육의 重要性 擴散과 바른 가정교육의 價値觀 정립
- 東洋的 가정교육과 西洋的 가정교육을 조화한 ‘한국형 가정교육 모델’ 開發(2000년)
- 가정교육지침 및 ‘新가정교육운동’ 추진방법등 實用的 매뉴얼 開發·普及

□ 制度 改善(法令改正등)

- 소주방·호프방·카페·民俗酒店등을 靑少年出入禁止業種으로 指定
- 靑少年 茶類 배달행위 禁止
- 靑少年보호연령을 ‘19세 미만’ 으로 統一(영화진흥법, 음비게임 법, 공연법등)
- 靑少年출입금지업소 出入靑少年 敎育命令制 도입

青少年保護 特別對策

行政自治部

I. 靑少年 保護對策 推進現況

< 概 要 >

- ◇ 행정자치부(구 내무부)에서는 지난 '96. 5월 學校暴力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『學校暴力 根絶 綜合對策』 추진
 - 아울러 금년에는 『靑少年保護法』 개정('99. 7월)에 따라 靑少年 有害環境 改善을 위한 노력을 持續的으로 경주

- ◇ 그러나 專擔人力 부족, 民·官의 관심부족 등 推進體系 이완
 - 유흥향락산업의 번창, 심야 영업제한의 해제 등 유해환경은 청소년 범죄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

- ◇ 따라서, 靑少年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政府와 自治團體間 推進體系 재 구축, 청소년 유해환경의 근절과 함께
 - 중·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전인교육 확대, 가정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개발 필요

□ 行政自治部の 主要 措置事項

- 學校暴力 근절 綜合對策 수립·추진('96. 5월)

- 自治團體의 대책 추진상황 點檢·評價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
 - 2회 56억원 : '97년 26억원, '98년 30억원

-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特別指針 시달('99. 7)
 - 청소년 보호업무를 자치단체의 중심시책으로 추진
 - 특별제도 및 주민홍보 실시, 유해환경 정화 및 감시 철저

- 靑少年 修練施設(28,229개소)에 대한 安全點檢 실시(7.6~8.10)
 - 불안전시설 8,192개소중 6,396개소 안전조치(1,796개소 조치중)

□ 地方自治團體 推進事項(10월말 현재)

○ 靑少年 有害環境 정화

- 『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』 운영(298개 협의회 752회)
- 유해업소 관련 합동단속 실시(6,564회 단속, 28,053건 적발)
-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표찰 부착(82,116개업소)
- 청소년 출입금지·제한구역 설정 운영 등

○ 靑少年 安全指導 및 健全文化 정착 추진

- 폭력없는 안전지대(Blue-Zone) 지정·운영(1,930개소)
- 청소년 지킴이 위촉(37,220명)
- 『집단 따돌림』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토론회 개최 등

○ 靑少年 善導·保護活動 전개 등

- 민간자율 『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』 운영(255개 단체 6,026명)
- 각급 자치단체장의 청소년 보호활동
 - 청소년 지킴이와의 간담회(351개 기관 691회)
 - 자치단체장 명의 협조요청 서한 발송(122회 215,796명)
 - 자치단체장 현장방문(989개 기관 946회 258,668명)

II. 推進上의 問題點

□ 靑少年保護 專擔部署 및 人力 부족

- 一線 시·군·구의 靑少年保護 담당공무원은 1~2명 정도에 불과, 效率的인 管理 어려움
- 특히, 유흥·단란주점 등은 組織暴力과 연계되는 사례가 많아 행정공무원 들이 團束에 限界
- ※ 인천시의 경우, 청소년 유해업소는 총 47,000여 개소이나 청소년보호 담당 공무원은 23명(시 3, 구·군 20)에 불과

□ 靑少年관련 施設 消防法令 규정 미흡

- 消防·防火施設 完비증명대상에 “호프집·소주방·게임방·콜라텍·전화방·노래방 등” 未包含
- 업소주인·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을 任意事項으로 규정
- 과태료 上限線이 50만원으로 微弱

□ 行政處分 業所에 대한 事後管理 허술

- 食品衛生法 등 관련법규상 無許可나 許可取消된 업소들에 대하여는 閉鎖命令으로만 행정조치
- 斷電·斷水, 출입문 封印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불법영업이 未根絶

Ⅲ. 推進對策

□ 靑少年 善導·保護活動의 지속 전개

- 體系的이고 持續的인 靑少年 보호대책 추진
 - 유해업주의 처벌 강화, 행정력 보강 등 법령체계 재정비
- 靑少年 修練施設 등 놀이공간 확충, 健全프로그램 개발 보급
- 자녀사랑운동을 國民意識 改革運動과 병행 추진 등

□ 靑少年 有害環境 정화

- 유해업소 合同團束 및 通行禁止·制限區域 운영 철저
 - 일벌백계의 관행정립, 적발시 지속관리하여 위반행위 근절
- 겨울방학·연말연시 기간동안 『特別對策期間』 설정·운영
- 多衆 이용업소 安全管理 실태점검

□ 靑少年 出入施設 소방법령 개정 추진

- 消防·防火施設 完備證明 발급대상 확대(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)
- 일정 규모이상의 多衆利用施設에 대해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동시설치 義務化(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)

- 업주 및 종사자 消防教育訓練 義務化(소방법 제8조의4)
- 過怠料 상한선 대폭 인상(소방법 제119조)

□ 靑少年 專擔部署 人力補強 대책

- 機能調整을 통하여 既存人力 재배치 활용
 - 단기적으로는 超過現員의 활용방안 강구

IV. 關係部處 協調事項

- 食品衛生法上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의 雇傭禁止 年齡을 靑少年保護法上 고용금지 연령과 統一(보건복지부)
- 食品衛生法 위반업소에 대한(斷電·斷水조치, 출입문 봉인 등) 사후 관리 방안 마련(보건복지부)
- 콜라텍 등 靑少年 출입이 잦은 新種業種에 대한 規制·管理 제도화 (문화관광부)
- 靑少年 놀이공간 擴充 및 프로그램 開發·普及(문화관광부)
- 호프집·소주방·카페 등 酒類 취급업소에 대한 靑少年出入制限 (보건복지부, 청소년보호위원회)
- 靑少年保護法 위반업소에 대한 行政處分 期間 단축 (청소년보호위원회, 자치단체)



青少年 善導를 위한
學生指導 綜合對策

教 育 部



I. 推進概要

- 「學生善導對策」('99. 1. 26 대통령께 보고) 추진 이후 集團따돌림 豫防·根絶 등 學生善導活動을 모든 教育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選定하여 推進
 - 集團따돌림 등 學生苦衷 申告相談電話(1588-7179)를 開設하여, 學生들이 적극적으로 人權을 保護하고 申告·相談하는 霧圍氣 成熟
 -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共同 대처와 범국민적인 自淨 霧圍氣, 教育청 및 各급 학교의 노력으로 學生善導의 성과가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음

- 學校 周邊의 靑少年 有害環境 整備를 위하여 '94년 이후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
 - 最近 規制緩和 霧圍氣에 편승한 靑少年 有害業所 擴散과 不法 雇傭의 增加
 - 靑少年 有害媒體物의 學敎內 流入이 증가하여 學生들의 非行·逸脫을 誘發
 - 우리부는 學生들의 건전한 成長 圖謀와 國家 公法秩序 確立 차원에서 적극 대처

- 씨랜드, 仁川 火災事件을 계기로 學生들의 安全意識 생활화와 건전한 餘暇生活을 영위할 수 있는 학교 安全敎育의 전면적 強化 추진

II. 現 況

- 新世代 학생들의 자유 분방한 生活方式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 善導에 어려움 가중
 - 消費性, 享樂性, 기성세대·질서에 대한 抵抗的인 태도에 물든 학생 증가
 - 학교에서의 懲戒나 교사의 訓戒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도 발생

-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出入시키거나 不法就業시키는 행위에 대한 團束 限界 露呈
 - 단속규정이 供給者(업자)에 限定되어, 관련된 청소년의 지도·단속은 학교의 校則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나
 - 법적으로 默認된 行爲라는 잘못된 인식으로,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校則에 의한 학생 懲戒 등 선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

- 청소년 업무가 각 부처에 散在되어 있으므로 청소년 선도에 부처간 有機的인 협조 요구
 - ※ 현재 청소년 업무는 정부의 18개 부처가 분담
 - 우리부의 학생 生活指導 업무는 基本 政策만 樹立하고(전담인원 : 1명), 執行業務는 시·도교육청으로 移讓
 - 시·도교육청의 自律性和 責務性에 입각한 實效性 있는 對策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임(시·도교육청의 학생생활지도 담당자 총수도 구조 조정으로 약 10% 감축)

Ⅲ. 對 策

가. 靑少年 問題解決을 위한 學校敎育의 強化

□ 學校相談 活性化로 善導 위주의 學生指導 體制 構築

○ 專門 相談敎師의 養成·配置 擴大

- 2000년도에 3,000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
- 진로상담 부장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자 우선 배치
- 초등학교 교사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상담활동 활성화 추진

○ 學生生活指導 擔當 敎師의 優待策 지속적 추진

- 전보, 포상, 해외연수자 선발시 우대
- 담임교사 수당을 월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(2000.3 ~)

○ 학생상담 관련 敎員研修 擴大

○ 家出 등 非行豫防을 위한 擔任敎師의 指導役割 提高

- 학생 근태상황 철저 파악 지도
- 가출 징후 조기파악, 동반가출 예방 등을 위한 주기적 상담 실시

□ 人性敎育 프로그램 擴大

○ 수능 및 고입 전형 이후 「特別勉學指導對策」 樹立·施行

- 학교 교육과정의 내실 운영으로 인성교육 강화

-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과 불법취업을 예방하기 위한 담임교사 상담 및 진로지도 실시
-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실시

○ 學生善導 優秀사례 發掘・普及

-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 총226편을 선정하여 일선학교 지도자료로 보급('99.12)
- 학생생활지도, 집단따돌림 추방활동 우수사례, IMF이후 보은 미담 사례 발굴・보급('99.12)

□ 代案教育을 擴大하여 中退生の 非行・逸脫 青少年化 豫防

○ 代案學校 設立 및 運營 支援 擴大

-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반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보조
- 다양한 특기・적성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지원

※ '97년 이후 대안학교 설립・운영에 우리부에서 총53.7억원을 지원하여 '98년도 6개교, '99년도 4개교 설립

○ 中途 脫落生이 예상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代案教育 프로그램 안내

- 대안학교와 사회교육 시설 등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 실시

□ 基礎學力 不振學生 責任指導制 導入

- 학습에 흥미가 없는 學業能力 不振兒를 위한 基礎學力 責任指導制 를 도입・추진하여 건전한 성장 보호

- 學習不振兒 判別道具 開發・보급(2000.7월)

□ 教育懸案 綜合對策 마련을 위한 워크숍 開催('99.11.26~27)

- 參席者 : 시·도교육청 관계자 212명
- 學習霧圍氣 刷新方案(세칭 “교실붕괴”문제 해결) 등 教育懸案 綜合對策을 수립
 - 2000학년도 학교교육의 획기적 개선 도모
 - 향후 청소년 문제 현안 발생시 수시 회의 개최
- 學習霧圍氣 刷新을 위한 관련 研究 施行('99.12)

나. 健全한 學生文化 育成

□ 靑少年 健全놀이 文化 育成

- 지역간 교류, 학교간, 지역교육청별 聯合 祝祭, 종합학습 發表會 개최
 - 도·농간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
(2000학년도에 3억6천5백만원 지원)
- 放課後 특기·적성교육 活動 활성화
 - 학생들이 선호하는 강사 초빙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·보급
(2000학년도에 700억 지원 예정)

□ 安全意識을 生活化하여 健全한 餘暇 文化 造成

- 겨울방학 대비 전국 초·중·고 安全敎育 強化

- 교육부 안전교육지침 제공, 학교별 집중교육 실시
- 가두 캠페인 및 학부모·시민 계도교육 전개
- 관련 교과를 통한 安全教育 프로그램 導入
-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 교육 실시
- 학교의 각종 행사시 安全守則 遵守 義務化 추진

□ 각급학교 시설을 靑少年 健全 놀이공간으로 活用

- 학교장 주관으로 放課後 학교시설을 開放하여 靑少年 및 住民의 놀이·휴식 공간으로 開放
- 가정통신문, 현수막, 학교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건전 이용을 위한 홍보 강화
- ※ 관련 법령 「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」 제정 완료('99. 8. 5)
- 複合施設 擴大를 통한 放課後 학생활동 空間 마련
- 지역주민의 문화·체육 및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 설치
- 방과후 학생들의 학습, 오락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
- 關聯法(「학교시설사업촉진법」) 및 시설의 整備로 2000학년도 신학기부터 본격적으로 放課後 학생 健全活動이 활성화되도록 여건 조성

다. 靑少年 問題解決을 위한 支援體制 強化

□ 靑少年단체 등 民間組織을 적극 活用하는 靑少年 體驗敎育 확대

- 健全 靑少年 團體 加入 및 活動 권장
 - 1학생1健全단체 가입 운동 추진
- 健全靑少年 단체의 體驗學習 내용을 學敎生活記錄簿에 기재하여 학생 지도 資料로 活用

□ 敎外 學生生活指導 強化

- 관계기관,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合同 巡廻指導 주기적 실시
- 학부모와 학생의 자율적인 善導活動 活性化
 - 학생회와 학급회 중심의 학생 자율 선도반 조직·운영
 -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靑少年 선도활동 참여 권장

□ 學敎周邊 등 靑少年 有害環境 整備活動 強化

-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學敎環境衛生淨化區域內 이전·폐쇄 대상 業所의 整備 추진
 - 자진 정비 이행 업주에 대한 혜택 부여 방안 강구
- 學敎環境衛生淨化區域內 각종업소 業態 違反 團束 철저
 - 검·경찰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지도·단속 실시

- 學校共同體 구성원이 참여하는 學教周邊 環境 淨化 및 監視活動 強化
 -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「환경 정화의 날」 행사 실시
 - 학생고충신고상담 전화(1588-7179)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문제를 신고·상담
 - 학교의 각종 행사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주제로 글짓기, 포스터 그리기, 단막극 경연 대회 등 개최
 - 학부모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참여 적극 권장
-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審議機能 強化로 유해업소 新規 設置 등 強力 抑制
 -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위촉시 민간 대표를 전체의 1/2 이상 위촉하여 심의의 실효성 확보

□ 敎權이 바로서고 規定과 規律을 遵守하는 學校風土 造成

- 敎權伸張을 위한 「敎職發展 綜合方案」(시안) 마련('99.12)
- 부당한 敎權侵害로부터 敎權 保護를 위한 支援體制 構築
 - 「교원자문변호인단」(가칭) 구성·운영(2000. 상반기 예정)
- 學校共同體 구성원의 민주적 合意에 의한 體罰規定 등 學生善導 規定 制定
 - 제정된 학교규칙은 엄격하게 집행하는 풍토 조성
- 學校生活記錄簿에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상세히 기록하여 생활지도 및 入試 資料로 活用하는 방안 도입

□ 학교 性教育 活性化를 통한 청소년 性暴力 예방조치 강화

- 학교 性教育 活性化를 위한 성교육 교육과정 개발·보급(2000. 상반기)
 - 발달단계별 교수요목 개발(초·중·고·대학별 각1종)
 - 성희롱,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 개발·보급
- 性教育 관련 政策 開發 및 정보 인프라 구축
 - 성교육 전담교사의 성교육 전문화를 위한 성교육 세미나 개최(기관별 연1회 이상)
 - 성교육 시범학교 운영 결과의 일반화를 통한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보급
- 兩性 平等意識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
 - 양성 평등의식 함양을 위한 소책자 제작·배포
 - 시민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

4. 關係部處 協調事項

-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內 이전·폐쇄 대상 업소의 團束 強化(자치단체)



青少年 利用施設・空間 擴充 與
善導・保護對策

文 化 觀 光 部

I. 推進對策

가. 靑少年 利用施設 · 空間 擴充 및 運營改善

□ 生活圈 靑少年 專用空間 擴充

- 靑소년들의 일상 生活圈에서 정보 · 문화 · 체육 · 餘暇活動空間으로 活用할 수 있는 生活圈 靑少年修練施設 및 靑少年文化의집 등 靑少年 專用空間 조성(생활권수련시설 문화공간화사업 동시추진)
- 시 · 군 · 구단위 生活圈 靑少年修練官 建立
 - 2003년까지 150개소 건립(현재 113개 확보 : 운영 73, 건립 40)
- 읍 · 면 · 동단위 基礎生活圈 靑소년 문화의집 조성
 - 2002년까지 총 300개소 설치 목표(현재 38개소 확보)
 - 생활권수련시설 등 기존 공공건물의 여유공간(100~200평)을 活用, 춤연습장(콜라텍 유사기능), 인터넷 부스, 음악 · 무용연습실, A/V감상실, 다목적홀, 창작공방, 靑소년동아리방 등 靑소년들의 참여공간 제공

□ 靑少年修練施設 特性化 및 改善

- 시설별 프로그램을 6개 分野別로 特性化할 수 있도록 施設 設置費 支援
 - ※ 6개분야 : 문화적감성, 과학정보마인드, 모험개척정신, 협력봉사정신, 전문직업 능력, 국제감각
- 既存 靑소년시설의 運營活性化 및 靑소년들이 선호하는 施設補強
 - 2003년까지 150개소 특성화 시범추진('99년 27개소 선정 · 추진)

□ 青少年修練施設 安全強化對策 마련 · 시행

- 청소년기본법령 安全管理規定 補完('99.9.21 시행규칙 개정)
 -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시 비상시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
 - 아동·장애청소년 등 보호를 요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의의무 강화
 - 비상시 대피경로 게시 및 인솔자·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등
- 청소년수련시설 담당자 安全意識 提高
 - 청소년수련시설 담당공무원(시·도, 시·군·구) 연수회('99.10.13-15)
 -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·지도사 워크숍 개최('99.11.11-13)
 -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교육 영상자료 제작·보급('99.11월)

□ 청소년을 위한 文化體育空間 擴充

-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生活圈 文化體育空間 擴充
- 擴充計劃

시 설 명	확 보 현 황	확충계획(목표년도)	비 고
문화의 집	33관	500관(2002년)	공공시설.폐교활용
농어촌 열린문화마당	10개소	매년 5개소 (시·군별 1개 목표)	청소년 놀이공간, 공연장으로 활용
지방문예회관	132개소 (운영 68, 건립 64)	232개소(2011년)	
공공도서관	429관 (운영 380, 건립 49)	750관(2011년)	
공립박물관/미술관	250관 (운영 235, 건립 15)	500관(2011년)	
예술창작스튜디오	7개소	30개소(2002년)	초·중·고교생의 예술체험공간
생활권 공공체육시설 ○운동장, 체육관 ○동네체육시설 ○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보급	141개소 3,553개소 2,263대	165개소(2002년) 완료 완료	읍·면·동 단위 설치

□ 中樞靑少年施設 建立 및 네트워크 構築

- 國立平昌修練院('98.11월 완공, 연인원 13만명 이용), 韓國靑少年中央公園 (2001년 완공), 國際靑少年센터(2000년 완공) 등 中樞靑少年施設 을 중심으로 地域 修練活動 綜合 連繫
- 全國 문화인프라정보 네트워크사업을 통한 施設·프로그램 連繫(중장기)
 - 문화공간관리시스템 / 종합문화정보 DB구축 / 프로그램 지원센터 운영 등 시설 및 프로그램 연계체제 구축으로 청소년문화체험 확대
 -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·공연장 등으로 확대

나. 靑少年保護·相談 및 自願奉仕 活性化

□ 靑少年相談體制 構築 및 擴散

- 韓國靑少年相談院 및 시·도, 시·군·구 相談室間 연계체제 구축
 - 시·도상담실(16개소) 설치완료, 시·군·구상담실 확대(79개소)
 - 사이버상담센터 운영('98.5월 개통이후 26만여건 접수)
 - 상담정보 및 관련기관 종합DB 구축
- 청소년상담 綜合情報網(유코넷 YouCoNet) 開通('99.11.1)
 - 전국 청소년상담기관 641개소 안내 및 16개 시·도상담실 홈페이지 연계
 - 청소년을 위한 「전문상담」, 학부모와 함께하는 「자녀교육본부」, 청소년지도자·상담자의 「종합자료실」 기능
- 찾아가는 靑少年相談 擴大 : 2004년까지 24개지역 擴大(매년 4개지역)

□ 靑少年 善導・保護 強化

- 家出靑少年 컴퓨터 運營
 - 현재 전국 44개소 운영(정부 및 지자체지원 11, 민간운영 33)
 - 시·도별로 컴퓨터 설치 확대 및 민간운영컴퓨터 지원방안 강구
- 민간단체 주관 家出靑少年 찾아주기운동 支援(한국청소년선도회 등)

□ 靑少年 自願奉仕 活性化

- 청소년의 社會奉仕 活動을 통한 人性教育 및 共同體意識 提高
- 16개 시·도 自願奉仕센터 설치완료('99.5.26 서울지역 개원)
- 韓國訪問의 해 등 주요국가행사에 自願奉仕活動 參與 확대

다. 어려운 靑少年을 위한 支援對策 施行

□ 疏外地域・청소년 福祉支援 및 찾아가는 特別 文化프로그램

- 農漁村學生을 위한 寄宿舍 건립, 獎學事業 및 청소년공부방 지원
- 疏外地域・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靑少年 文化프로그램 운영 확대
 - 찾아가는 청소년수련마을(연간 100여회 6만여명), 연극공연(연간 50여회 10만여명), 푸른음악회(16개지역 7만여명), 장애·교화청소년 대상 이동예술공연('99년 10회 1,895명) 등
- 지역의 非正規學校, 産業體特別學校 文藝活動 지원

□ 靑少年問題 豫防을 위한 家族文化活動 支援

- 靑少年과 父母가 함께하는 文化프로그램 擴大
 - 靑少年가족을 위한 덕수궁 음악축제(매월), 지방순회음악회 및 靑少年수련 시설을 통한 가족프로그램 연중 실시
 - 靑少年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문화운동 지원 : 한국문화복지협의회 등 7개단체의 우수기획프로그램 지원(가족문화상 시상, 가족사랑노래 보급 등)
 - 인터넷을 통한 가족문화정보 제공(간행물윤리위원회, YMCA 등 추천)
- 올바른 子女指導를 위한 父母教育 실시(한국靑少年상담원 주관)
 - 2002년까지 프로그램(10종), 교수요원양성(700여명), 학부모상담(67만명)

□ 年末·年始 靑少年 激勵·善導行事

- 不遇靑少年 및 施設(고아원, 소년원) 慰問支援(지역단체·인사 참여)
- 壯한 少年·少女家長 표창(시·도별 1명씩 16명)
- 家族이 함께 즐길 수 있는 家族프로그램 16개시·도 示範實施 支援
(전국 18개 프로그램, 8천여명)

라. 創意的인 靑少年프로그램 開發支援

□ 靑少年의 自律參與活動 支援

- 靑少年으로 구성된 靑少年委員會 運營('98이후, '99.11.6 제2기 18명 구성)
 - 靑少年정책과정·행사 참여 및 각종 정책건의(시·도, 단체, 시설 등 구성확대)

- 청소년이 企劃하고 主體的으로 參與하는 각종 동아리 活動 支援
 - 새천년청소년문화축제1999(8.13-15), 청소년창작춤경연대회(9.4-10.24), 전국청소년마칭밴드경연대회(10.6) 등 프로그램
 - 청소년열린광장 및 토론회, 사이버의회, 인터넷방송 등을 통한 참여활동

□ 靑少年 및 社會團體 主管 靑少年프로그램 支援

- 21세기 靑少年像에 맞는 特性化프로그램 開發·普及
 - 2003년까지 6개분야 30종 추가 개발·보급(기 보급 93종)
- 情報化社會 대비 靑少年 職業體驗프로그램 : 2000년 약2,000명('99년 322명)
- 우리文化 한아름敎育(가방없는날·특활시간 활용)
 - 초·중·고생 대상으로 문화현장을 직접 연계, 문화체험 확산
- 靑少年團體를 통한 각종 行事(60여단체 150여회), 청소년의달(5월), 방학 등을 이용한 계기별 프로그램(여름문화학교) 등

□ 文化藝術機關을 통한 靑少年의 文化體驗 擴大

- 국·공립 문화기관(15개기관)을 靑少年特別活動空間으로 開放
 - 청소년 문화체험프로그램 집중 실시
- 국립문화기관(7개기관) 찾아가는 文化프로그램(연간 190여회 30만여명 참여)
- 전국 文化院·博物館 등 文化學校(235개소) 運營 : 문화강좌(연간 10만여명) 및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이동문화학교(연간 30여회)
- 古宮, 文化藝術機關 開放('90년대 이후부터 18세이하 청소년 무료입장)
 - 박물관, 미술관, 유적관리기관(현충사, 칠백의총 등), 궁·능(경복궁, 창경궁, 덕수궁, 종묘, 창덕궁, 능원) 등
- ※ 지자체의 공립박물관 : 24세이하 청소년 입장료 할인(2000년부터 시·도 자율운영)

II. 關係部處 協調事項

學生들의 靑少年修練施設 利用 活性化

- 靑少年 人性涵養과 創意力 啓發을 위해 「교육비전 2002」중 體驗 學習強化 프로그램으로 靑少年修練施設 적극 이용(교육부)
- 지역단위 靑少年修練活動 協議體 構成 협조(교육부, 행자부)

學生 1人 1靑少年團體 加入 擴大(교육부)

- 靑少年단체활동 活性化를 위한 評價制度 導入(내신성적 반영 등)
- 靑少年단체 및 수련활동 指導敎師 인센티브 賦與

修練施設 安全管理強化 및 運營改善對策(법령개정 등)

- 靑少年수련시설 保險加入 義務化 추진(재정경제부 등)
- 靑少年야영장 施設基準 補完 : 천막, 보안등 설치 등(교육부, 환경부)
- 無許可 수련시설 利用規制 강화(행정자치부, 지방자치단체)
- 民間投資 誘導 및 운영개선을 위한 電氣料 減免(산업자원부)

青少年 有害 食品接客業所 不法營業 對策

保 健 福 祉 部
食 品 醫 藥 品 安 全 廳



I. 靑少年 有害 食品接客業所 不法營業 實態

□ 食品接客業所의 靑少年 關聯 營業形態

구분 업종	고 용	출 입	주류제공	비 고
단란주점	×	×	×	속칭“티켓다방 주로 주류 조리·판매하는 소주방, 호프, 카페 등
유흥주점	×	×	×	
휴게음식점	(×)	○	×	
일반음식점	(×)	○	×	

□ 食品接客業所 管理現況

○ 食品接客業所 現況

(’99. 6월말 현재)

업종 계	휴 게 음 식 점				일반음식점	단란주점	유흥주점
	소계	다방	제과점	기 타			
635,008 (개소)	69,166	42,149	18,522	8,495	524,219	23,632	17,991

○ 團束實績

(’99. 6월말 현재)

구분 단속 건수	위 반 내 용						처 분 내 용					
	계	업태 위반	미성년 자출입	퇴폐 영업	무허 가	기타	계	허가 취소	영업 정지	시설 개수	고발	기타
353,195 (개소)	35,850	2,943	4,335	2,450	3,663	22,459	35,850	7,261	10,393	1,349	3,663	13,184

○ 團束體系

기 관 별	조 치 사 항
식품의약품안전청	위생감시지침 시달
시·군·구청	영업허가, 지도·점검, 행정처분
경 찰 청	풍속영업 및 청소년보호 사항 단속
소 방 서	소방·방화시설 점검

○ 指導·監督 및 運營實態

- 보건복지부의 접객업소 단속기능은 '96. 4월 폐지
(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·도, 시·군·구로 이관)
-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기능도 '99. 5. 24 정부직제 개정시 폐지
되고 지도점검 지침만 시달하도록 조정
- 청소년 고용·출입, 주류제공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과 무허가,
퇴·변태 등 식품위생법위반 사항에 대한 지도·단속은 시·
군·구 및 경찰이 공동으로 또는 각각 별도로 시행
- 노래연습장, 비디오방, 전자오락실등 청소년이용시설은 음반·
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문화관광부에서 담당하고
경찰이 단속

II. 問題點

- IMF이후 생계형 無許可 不法營業이 增加하고 團束이 소홀해지는 틈을 타서 퇴·변태, 無許可 不法營業 行위가 增加
 - '99 상반기중 353,195건 團束(營業停止·許可取消 17,654건, 無許可營業 摘發 3,663건)

- 指導·團束機關인 地方自治團體의 團束意志 약화 및 단속횟수 감소
 - '94년 1,809,587건 團束 → '98년 828,834건 (54%減少)

- 業所에 대한 團束權을 地自體와 警察이 함께 갖고 있는 等 團束權 重複으로 團束이 어려운 高질적 違反業所는 默認 또는 責任回避, 團束이 容易한 業所는 오히려 빈번한 出入으로 民願惹起

- 中央 및 地方의 效果的 合同團束 불가
 - 食品醫藥品安全廳 中央團束班이 廢止되어 不法營業 確認團束 및 自治團體와의 合同·交叉團束, 特定事案 企劃團束 등 不可
 - ※ 식품위생법상 식약청 직원의 업소 출입검사 권한은 있으나, 직제상接客업소 단속권한 삭제 및 담당인력 삭감

- 告發措置를 해도 초범 등 理由로 대부분 罰金 등 輕微한 處罰에 그치고 있음.
 - 重複 團束될 경우 加重處罰을 피하기 위해 他人名義(고용사장) 營業 行爲가 增加

Ⅲ. 無許可 등 不法營業 對策

□ 罰則強化

- 食品接客業所의 靑少年保護 違反行爲에 대한 罰則強化
(食品衛生法改正案 國會提出, 施行規則改正案 法制處 審査中)
 - 淸소년을 유흥接客員으로 고용한 경우 1차 적발시 바로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조치를 행하고 동일장소 재영업허가 제한을 강화
 - ※ 현행 6개월이내 동일장소, 동일업종 허가제한
→ 1년간 동일장소 모든 식품接客업 허가제한
 - 단란주점·유흥주점 등 淸소년유해업소에서 淸소년 고용위반시 1차 영업정지 3월, 2차 허가취소토록 강화
 - 淸소년 고용·출입, 주류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만을 행하고 과징금 대납 불허

□ 團束強化

- 地方自治團體·警察이 合同한 企劃 團束 強化
 - 무허가, 업태위반 등 불법영업행위와 淸소년 고용·출입, 퇴폐 행위 등 풍속위반행위는 대부분 동시에 일어나므로 지자체와 경찰의 공조하에 불시 합동단속 실시
 -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단속지침을 수립·시달하고 시·도지사 책임하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·군·구 교차 합동단속 실시

○ 靑少年 有害業所에 대한 集中團束 實施

- 靑少年이 많이 몰리는 지역의 유흥업소에 대한 靑少年 출입, 주류 제공 및 고용행위에 대한 주기적 합동단속 실시
- 靑少年보호위원회 주관하에 행정자치부,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경찰청 협조

□ 徹底한 法執行

○ 地方自治團體의 確實한 法執行 體系 確立

- 시·군·구의 법령 및 위생감시지침에 따른 조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시·도에서 수시 확인점검
-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점검반의 기능을 부활시켜 전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엄정한 법집행 이행여부 확인

○ 營業停止, 許可取消 등 處分結果 履行與否 確認點檢 徹底(食藥廳의 단속지침을 補強)

- 무허가업소, 영업정지 등 처분내용을 출입문에 게시
- 단전·단수 및 간판철거
- 출입문 폐쇄 및 시설물 봉인조치 등

□ 市民監視體系 活用

- 無許可業所에 대한 市民申告 유도
 - 부정·불량식품, 무허가업소 신고전화 “1399”에 대한 주민홍보 강화
 - 무허가영업, 청소년 고용 및 퇴·변태영업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인상(현재 2~10만원 → 5~20만원)
- 無許可業所 명단공개
 - 지역생활정보지, 반상회보 및 자치단체 뉴스레터 등에 게재하여 주민의 이용중단 및 감시수단으로 활용

青少年 失業對策 推進計劃

勞 動 部

I. 靑少年 失業動向

-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지속적으로 增加하였으나, '98.12월을 정점으로 減少 趨勢
- 全體 失業은 금년 3월부터 減少하였으나, 靑少年 失業은 未就業者 대책에 힘입어 금년 1월부터 減少

< 청소년 실업추이 >

(단위 : 천명, %)

구 분	'97.7	'98.7	'98.12	'99.1	2	8	9	10
실업자 (실업률)	168 (6.6)	394 (17.6)	427 (19.7)	418 (19.1)	409 (19.2)	259 (12.2)	220 (10.6)	218 (10.6)

- 우리나라 靑少年 失業率은 OECD 국가에 비해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며, 청소년 실업률은 어느 나라나 全體失業率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
- 靑少年失業率은 '99.10월 10.6%로서 OECD국가('98년) 청소년 실업률 12.8%에 비해 2.2%p 낮은 수준
- 全體失業率 대비 靑少年失業率 倍數는 2.2배로서 OECD 국가 평균치 ('98년) 1.9배 보다 약간 높은 수준

< 한국과 OECD 국가간 청소년 실업률 비교 >

(단위 : 천명, %)

구 분	한 국	프랑스	캐나다	영 국	미 국	독 일	일 본	OECD
전 체(a)	4.8	11.9	8.4	6.2	4.5	8.6	4.2	6.8
청소년(b)	10.6	25.4	15.2	12.3	10.4	9.4	7.7	12.8
배수(b/a)	2.4	2.1	1.8	2.0	2.3	1.1	1.8	1.9

※ 한국 '99. 10월, OECD국가는 '98년 통계

Ⅱ. '99년 靑少年 失業對策 推進 現況

1. 概 況

- 6,7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7천명에게 短期 일자리를 提供하거나 有望職業 就業訓練 등을 실시할 계획
 - ※ '99.10월말 3,699억원(예산의 55.0%)을 투입하여 118천명(목표인원의 80.3%)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유망직업 취업훈련 등을 실시
- 그밖에 68개의 職業指導 示範學校를 選定하여 직업 지도를 실시 중이며, 雇傭安定센터와 WORK-NET을 통하여 求人情報 提供 등의 就業斡旋서비스를 제공중

< '99년 靑少年 失業對策 推進 現況 >

(단위 : 억원, 천명)

구 분	예 산		수혜인원	
	계 획	실 적	계 획	실 적
○ 단기 일자리 제공	6,480	3,559	133	109
- 인턴제	2,090	1,217	67	47
- 각급학교 보조요원	480	390	19	18
- 공공부문 정보화사업	3,301	1,463	34	32
- 공공서비스 요원 등	609	589	13	12
○ 유망직업 취업훈련	240	140	14	9
- 전문직 자격취득	240	140	14	9
총 계	6,720	3,669	147	

2. 細部事業 推進現況

□ 短期 일자리 提供

- 대졸·고졸인턴제, 補助敎師 일자리제공 사업, 情報化 事業 등을 통하여 短期 일자리를 제공중
- '99년에 6,480억원의 예산으로 133천개의 短期일자리를 제공할 계획
 - '99.10월말 3,559억원(예산의 54.9%)을 투입하여 109천명(목표인원의 82.0%)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

□ 有望職業 就業訓練 實施

- 고학력 신규 未就業者의 就業難 解消를 위해 특별훈련과정개설 등 다양한 對策을 마련·시행중
 - ※ 훈련프로그램 例 : D/B개발실무, 인터넷웹디자인, 텔레마케팅, 정보처리전산, 증권전문가, 투자상담사, 전자상거래전문가, 컴퓨터그래픽, CAD/CAM 등
- '99년에 240억원의 예산으로 14천명에게 職業訓練을 실시할 계획
 - '99.10월말 140억원(예산의 58.3%)을 투입하여 9천명(목표인원의 60.0%)에게 직업훈련을 실시

□ 職業指導 및 僱傭서비스 提供

- 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이 適性和 能力에 맞는 職業選擇을 할 수 있도록 職業指導를 실시중

- 지방노동관서별로 1개교 이상의 『職業指導示範學校』를 선정하여 '99년 중에 68개교 운영중
 - ※ 지도내용 : 직업적성·흥미·선호도검사의 실시, 집단 및 개별직업상담, 진로상담교사에게 직업지도업무소개
- 지방노동관서에서 名譽職業相談員과 專任相談員이 직업지도 실시(명예직업상담원 : 11월 현재 23명)
- 기타
 - 고용안정정보망 『Work-Net』과 『未來職業探索教室』 등을 통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情報를 제공중

□ 青少年有害業所 職業紹介 不條理 團束

- 團束對象
 -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
 -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영업중 다류를 외부에 배달하여 판매하는 다방
 - 19세미만의 자 소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제출
- 違反者 措置計劃
 - 무허가(무등록) 직업소개소 : 폐쇄조치
 - 허가(등록)직업소개소 : 등록취소,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강화

3. 其 他

- 산업사회의 生産現場에 필요한 技能人力 養成訓練실시
- 技能大學(20개)에서 多技能技術者課程(학위과정)운영



青少年問題綜合對策

大 檢 察 廳

I. 一般 推進狀況

□ '95. 12. 大統領 指示에 의거 學校暴力 根絶對策으로 「學校擔當指導檢事制」, 「우범학생 結緣事業」, 「자녀안심하고 學校보내기運動」을 3代 力點事業으로 選定, 施行

- 學校擔當 指導檢事制는 檢査와 民間自願奉仕組織(敎師, 學父母, 檢査선도위원)이 學校周邊 및 우범지역 巡察活動 등 犯罪豫防活動을 통하여 學校周邊을 淨化
- 우범학생 結緣事業은 檢査善導委員과 우범학생을 1:1結緣, 相談·指導 등을 통하여 非行豫防 및 善良한 學生 保護
- 「자녀안심하고 學校보내기 運動」은 有關機關, 民間自願奉仕委員과 함께 團束과 犯罪豫防活動을 병행하여 學校暴力, 靑少年犯罪 및 有害環境으로부터 靑少年을 保護

□ '97. 9.부터 大檢과 53개 一線 廳에 推進本部를 設置하여 「자녀안심하고 學校보내기 運動」을 檢査의 力點事業으로 본격 추진

- 종전의 學校擔當 指導檢事制, 우범학생 結緣事業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靑少年保護運動으로 적극 展開
- 團束活動, 犯罪豫防活動 및 支援活動 병행

II. 자녀안심운동 推進狀況 및 成果

□ 主要 推進 活動('99. 10월말 현재)

○ 申告電話 운영

- 대검찰청 및 전국 53개 일선 검찰청에 24시간 신고전화 운영
- 학생·학부모에게 신속·간이한 신고수단 제공, 암장되기 쉬운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의 단속에 기여
- 전국에서 총 26,882건 접수, 25,068건 처리

○ 學校暴力 및 有害環境 徹底 단속

- 유해업소 불법고용 단속, 신고전화에 따른 소재조사 등을 통하여 가출청소년 17,475명 귀가조치
- 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사범 202,274명 단속, 16,841명 구속

○ 犯罪豫防 自願奉仕活動

- 교외생활 지도,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순찰 70만여회 실시
- 우범·불우청소년과의 결연을 통해 지원 등 선도활동 실시
- 청소년의 문화·체육활동을 위한 「푸른쉼터」 85개소 조성 및 문화행사 개최
- 범법 학생이 없는 108개 학교를 「준법우수학교」로 선정, 지원

□ 推進成果

- '97년까지 靑少年 犯罪가 연평균 15%의 증가추세를 보여오다가 '98년부터 증가세 減少 및 發生件數도 減少(件數 1.8% 감소)
- '99년 상반기에도 증가세 및 發生件數도 減少(件數 2.1% 감소)

□ 國民財團 設立

- '99. 5. 자녀안심 運動을 범국민적 靑少年 保護運動으로 發展시키기 위하여 自願奉仕委員 代表 등이 參與하는 「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運動 國民財團」 設立(이사장 김수환 추기경)
- '99. 6. 國民財團 創立紀念行事로 國際포럼 개최(30개국 참가)
- '99. 11. 情報通信部, 文化放送과 공동주최로 淫亂 情報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기 위한 인터넷 淫亂物 차단 프로그램 배포 등 인터넷 淨化事業 추진
 - 전국 검찰청 지원하에 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배포

□ 向後 推進方向

- 檢察은 團束, 國民財團은 豫防·善導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자녀안심 運動 體系化·內室化 도모
- 各계·各층으로부터 自願奉仕者를 모집하여 진정한 國民運動으로 승화시킴으로써 靑少年 保護意識의 擴散, 정착 추진
- 靑소년의 음주·흡연, 有害業所 출입, 음란·폭력 媒體物 接觸遮斷 등 범죄와 非行의 원인이 되는 有害環境의 근절에 주력
- 靑少年의 意識과 靑少年 問題의 分析, 효과적 豫防·善導方案 등 연구사업 활성화

- 國民財團을 시민단체와 政府間 협력의 구심점으로 육성하여 청소년 보호에 관한 社會的 力量을 결집하고 政策 效率性 제고
- 靑少年 健全育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전국민의 遵法意識 및 道德性 향상운동으로 발전 추진

Ⅲ. 靑少年 有害環境 團束方案

가. 現況 分析

- 規制緩和 방침에 따른 업소간 顧客誘致 경쟁으로 業主의 준법 및 청소년 보호의식이 현저히 弱化
- 청소년 성장환경과 의식변화로 인한 가정과 학교의 學生生活 統制力 弱化 및 이로 인한 유해환경 이용 청소년 急增
- 團束責任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자치단체의 人力, 기타 法執行을 위한 준비가 不足하고 기관간 협력 미흡으로 實效性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

나. 基本的 對策

- 有害環境의 급증 및 단속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관간 有機的, 실질적 협력을 強化하되 기존 기구를 활용
- ※ '98. 7. 國務總理 지시로 청소년보호위원회 「中央點檢團」, 「地域別 靑少年對策協議會」구성, 운영 중

- 靑少年 問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提高함으로써 有害環境을 根本적으로 제거하고 政府 人力의 부족현상을 解消하기 위하여 民間 參與의 強化方案 적극 시행

다. 具體的 方案

□ 靑少年보호위원회 中央點檢團 활동 활성화

- 靑少年보호위원회 산하 中央點檢團을 활성화하여 중앙 차원의 綜合的 團束 및 有害環境 淨化 정책 강력 추진
- 同 點檢團의 활동을 강화하여 地域別 유해환경 실태, 단속 및 靑少年 保護活動 현황 持續 點檢
- 實態點檢 결과를 주기적으로 公表함으로써 自治團體의 주의를 환기하여 전국적 靑少年 보호활동 촉진

□ 地域別 靑少年對策協議會 활용

- 構成 現況
 - 각 검찰청 차장검사(또는 지청장)를 협의회장으로 하여 검찰청 소년전담부장, 각 경찰서 형사과장, 지방자치단체 내무국장 및 복지(또는 靑少年) 담당국장,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구성
 - 지속적 합동단속, 국민 계도,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조방안 협의 및 시행의 임무 수행 중

○ 團束活動 강화

- 시·군·구별로 검찰, 경찰, 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4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 활동강화
-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및 출입, 주류·담배 판매 등 기초적 유해사범을 선정, 지속적 단속
- 단속기간설정 등은 일시적 효과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, 업주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밀집지역을 상시 순회, 점검하는 방법으로 무기한 집중 단속 시행
- 처벌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 축적 후 재범시 엄중 처벌하는 방법으로 계도와 단속 병행
- 단속반은 증거확보 후 적발보고서를 작성, 소년전담검사에게 제출하고 입건 여부를 지휘 받아 처리

□ 民間參與의 促進方案 시행

○ 必要性

- 유해업소의 급증으로 정부 인력만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고 은밀한 수법을 사용하는 관계상 정보수집 곤란 등 단속의 목적 달성 곤란
- 민간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양양하여 시민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하는 풍토 조성이 보다 근본적 대책

○ 民間의 參與 촉진

- 자녀안심자원봉사위원,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에 유흥업소 밀집지역 감시책임을 부여하여 지속적 업소 방문으로 업주 및 청소년에 대한 계도활동 실시
※ 각 부처별 유관단체 활용 방안 강구
- 동 단체들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활동편의 제공을 통하여 활동을 장려하고 책임의식을 부여,
- 시민들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자녀안심 신고전화(전국공통 1588-2828) 등을 통하여 신고할 것을 권장하는 공익광고 시행
- 수사기관은 민간 감시단의 고발 또는 제보시 최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여 활동의 실효성 및 권위 보장

□ 靑少年의 申告 獎勵

- 靑少年들에게 有害環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을 고취하여 有害環境에 대한 抵抗力을 培養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식을 昂揚하는 취지
- 學生, 靑少年層으로부터 關聯 情報를 신고 받아 團束에 활용
 - 유해환경 소비자인 청소년층으로부터 정확한 정보 입수 가능
 - 청소년만을 선별 출입시키거나 단골들을 상대로 은밀히 자행되는 불법행위 적발에 활용

- 教育廳 주관으로 學校 相談教師를 통하여 신고를 獎勵하고 개별 面談을 통하여 접수 및 검찰(소년전담검사실)에 통보
- 申告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出張搜查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철저한 秘密 보장

IV. 靑少年 利用施設 및 空間의 擴充

□ 푸른쉼터 活性化

- 자녀안심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에게 건전한 體育 및 文化活動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설치, 운영 중(전국 44개청, 85개소)
- 푸른쉼터에 대한 自治團體의 관리 지원 및 文化活動 예산 지원 등 활성화 방안 시행

□ 콜라텍 陽性化

- 靑少年에게 청량음료를 판매하면서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營業이 청소년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음.
- 일부에서 變態的 營業을 하고 이로 인하여 無許可 무도장으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으나 施設基準 및 營業者 遵守事項을 마련하여 양성화 함으로써 健全한 休息空間으로 育成
- 테크노댄스 연습용 컴퓨터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컴퓨터게임장과 통합 운영할 길을 터 줌으로써 綜合的 休息場所로 發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있음.

V. 關係部處 協調事項

合同團束班 運營 관련(행정자치부, 자치단체)

- 合同團束班員이 각 소속 기관의 固有業務와 합동단속 업무를 並行하는 경우 단속의 实效性이 低下
- 각 기관에서 大型慘事 등의 豫防을 위한 합동단속의 重要性을 인식, 단속반원의 一般業務 免除 및 活動費用 支給 등 단속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※ 합동단속반 활동 상설화 運營체계 구축

- 활동시간이 주로 야간임을 감안, 勤務時間의 特例를 인정하는 등 소속 기관장의 配慮 요망

自治團體의 關心 증대(자치단체)

- 자치단체가 規制緩和 방침 또는 주민여론을 의식한 유해업소 감독 등 청소년 보호업무가 소홀·완화 지양
- 특히 衛生 관련 공무원 보강 등으로 원활한 업무수행 뒷받침 필요
- 최근의 잇단 大型慘事를 계기로 청소년 보호에 대한 認識 提高 및 청소년보호법 등 關聯法令의 철저한 집행 요망

□ 民間 監視活動 支援(경찰청)

- 民間團體는 감시활동시 신변안전에 대한 우려 및 業主의 협조거부가 가장 큰 애로사항임을 호소

※ 점검 등 감시활동 권한 부여 방안 강구 요망

- 監視團體가 활동 계획을 경찰에 事前 通報하고 인근 파출소 또는 112 순찰차가 필요시 積極 支援하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 있음

□ 學校의 役割 增大(교육부)

- 學校 당국의 有害環境 점검 및 團束에 대한 역할 강화
- 學校 및 教師의 선도기능 강화, 學則의 엄격 적용, 요망
- 특히 학교가 問題의 노출을 기피하는 경향을 탈피하고 搜查機關에 대한 情報提供을 활성화하는 등 타 기관과의 協調體制 강화

□ 行政的 制裁의 강화

(행정자치부, 보건복지부, 문화관광부, 국세청, 자치단체)

- 업소의 청소년 有害行爲 적발시 營業停止, 許可取消 등 행정처분의 신속 집행 및 事後 點檢活動 강화
- 명의변경 등 행정처분 회피 封鎖를 위해 적발 즉시 營業場 閉鎖, 명의변경 금지 등이 가능토록 假處分에 유사한 制裁 制度 法制化
- 有害行爲를 반복하는 業所 적발시, 입회조사 등 稅務調査로 불법 영업에 의한 利益을 還收하는 등 실질적 制裁措置 철저 시행

□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 運營 강화(교육부)

-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內 유해업소 설치 허가기준 相異로 許可 濫發 사례 防止
- 특히 淨化區域 設定前 기존 유해업소의 閉鎖 및 移轉에 관하여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責任所在 명확화
- 設置許可 심의기준을 統一하고 이전·폐쇄조치의 책임소재를 자치단체로 一元化
- 자발적으로 移轉하는 業主에 대한 稅制, 기타 財政的 혜택 부여

□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改正(문화관광부)

- 適用年齡을 19세 미만으로 統一
- 비디오 등을 等級을 違反하여 貸與하는 행위에 대한 刑事處罰條項 復活
- 비디오감상실의 監督이 가능하도록 施設基準 강화



青少年 有害環境 團束對策

警 察 廳



I. 現況 및 問題點

□ 청소년유해환경 단속현황

구분 기간	계	위 반 내 용						조 치				행정 처분
		청소년 관련 출입· 고용등	윤락 행위 남녀 혼숙	시간외 영업	불량만 화음란 비디오 방영	게임 제공 사행 행위	기 타	구 속	불 구 속	즉 심	기타 (계도 훈방)	
'98. 1~10	75,792	13,701	1,018	14,693	958	1,508	43,914	1,048	63,319	3,100	8,325	48,923
'99. 1~10	58,445	14,124	1,338	3,360	804	1,910	36,909	1,141	50,536	2,868	3,900	34,509
증감 (%)	-17,347 (-22.9)	+423 (3.0)	+320 (31.4)	-11,333 (-77.1)	-154 (-16.1)	+402 (26.7)	-7,005 (-16.0)	+93 (8.9)	-12,783 (-20.20)	-232 (-7.5)	-4,425 (-53.2)	-14,414 (-29.5)

※ 기 타 : 호객행위, 무허가 영업, 기타 시설위반 등

□ 分 析

- 靑少年 出入·僱傭 및 주류제공 등 청소년 상대영업 단속은 14,124건 3.0% 증가로 단속의 質的向上 도모
- 年少者 시설을 갖춘 노래연습장의 許容, 「소주방·호프집 등」 고용은 금지되나 출입은 가능 등 각 關聯法規의 規制緩和로 악덕업주들의 상업주의로 인해 不法事例 增加하는 추세이나,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.
 - 남녀혼숙 장소제공 31.4%(+320) 증가
 - 기타 노래연습장에서의 주류제공사례 등

□ 問題點

- 警察 本然의 業務에 경찰력 集中 運營
 - 강·절도사범 등 5대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순찰 및 검거활동의 강화로 치안력을 집중운영 함에 따라 유흥업소 단속한계 노출
 - ※ 파출소 경찰관의 근무시간 중 95%이상이 순찰 및 신고사건 출동에 전종, 수사형사의 경우 98%이상이 범인검거 잠복 등 수사활동에 전종
 - 개정 「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」에 따라 풍속저해행위 및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해서만 중점단속
- 團束人力の 不足 및 士氣 低下
 - 풍속관련 단속 직원은 서울 등 대도시 경찰서의 경우 2명, 지방 시·군·구 경찰서의 경우 1명으로 타업무와 검무 및 야간단속 등 격무로 단속관련 사기저하(기피부서)
 - 파출소 직원의 경우 도보순찰, 112순찰, 소내대기, 방법심방, 소재 수사 등 과중한 업무로 유흥업소 단속 전념 곤란
- 業主들의 遵法意識 不在
 - 영업정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
 - 무허가로 영업하는 것이 허가받아 영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다는 불법의식 팽배

※ 許可 받은 업소는 不法營業으로 적발시 刑事處罰과 병행하여 영업정지(과징금)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으나, 무허가 업소의 경우 단속되어도 行政處分 없이 대부분 罰金刑만 받게 되어 불이익이 더 적다고 생각함.

II. 警察廳 措置事項

□ 風俗業所 불법영업 特別團束 실시

- 特別團束 期間 ; '99. 11. 1~12. 31.
 - ※ '99년중 9회 126일간 특별단속기간 운영
- 重點團束 對象
 - 청소년 접대부 고용, 율락 알선행위
 - 청소년 상대 술·담배 판매행위
 - 음란·퇴폐 등 풍속저해행위
- 團束方法
 - 각 지방청별 「풍속기동단속반」 운영(11월중 주3회, 12월중 주2회)
 - 상습 불법영업업소,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집중단속
 - 불법영업에 대한 사전 첩보입수 후 기획 단속실시
 - 동일지역 업소는 같은 시간대 동시단속

□ 不法營業 적발업소 事後管理 徹底

- 警察이나 許可官廳에 적발되어 營業停止나 閉鎖命令 받은 업소에 대하여 事後관리 철저
 - 주요 감시업소로 지정, 반복단속 등 특별관리
 -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점검철저
 - 112신고 되었으나, 단속에 실패한 업소 집중단속

- 無許可로 영업하는 것이 許可 받아 영업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리하 다는 不法意識 불식

□ 警察 - 業主間 유착관계 根絶對策

- 遊興業所 密集地域 단속 경찰관 중 不適格者 교체(11. 20한)
 - 교체대상
 - 경찰서 풍속담당 1년이상 근무자
 - 파출소 6개월이상 근무자
 - 파출소장, 풍속담당자는 청렴, 강직한 경찰관을 선발 배치

- 단속실적 優秀者 褒賞 및 내부비리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
 - 특별단속기간('99.11.1~12.31) 중 실적우수자 포상
 - 경위이하 특진 및 경찰청장 표창
 - ※ 뇌물공여의사 표시자 단속 유공경찰관에 대해서도 특진 및 표창실시
 - 상납관행, 특정비호세력 등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희망보직 우선 배치 등 인사상 혜택부여

非行青少年 善導・保護活動 강화

- 青少年 善導를 위한 자정 분위기 조성
 - 교육청, 학교측과 협조 학생 교내생활지도 강화
 - 선도단체와 합동으로 유해업소, 학원 등 주변 선도활동 전개
 - 청소년지킴이 등 자원봉사 적극 활용
- 青少年保護法 위반사범 단속 철저
 - 청소년 상대 불법영업행위 철저 단속
(업종불문, 준법영업질서 정착때까지 지속단속)
 -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
 - 업주 자율정화 유도를 위한 홍보·계도활동 병행

Ⅲ. 關係部處 協調事項

青少年 年齡을 19세미만으로 統一(문화관광부, 청소년보호위원회)

有害業所 稅務調査 실시(국세청)

- 遊興業所의 실제업주를 색출, 처벌하기 위해서는 徹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資金出處를 파악, 차단 필요
- 不法業主에 대해서는 脫稅與否 등 철저한 確認 및 追徵

□ **不法業所 建物主 처벌 강화(건설교통부)**

- 건물주의 적법한 建物管理義務 강화(건축법령 개정)
- 악덕업주의 不法營業 源泉遮斷을 위한 건물주에 대한 양벌규정 마련

□ **불법업소 斷電·斷水 근거 補完(보건복지부, 산업자원부)**

- 無許可 業所 및 不法業所에 대한 간판제거, 施設物 封印 등 폐쇄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, 영업장소로 사용할 수 없도록 斷電·斷水 등 강력 규제

※ 건축법 제69조만으로는 폐쇄된 업소에 대한 단전·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바, 식품위생법 등에 명확한 규정 마련 검토

□ **團束關聯 法令 개정(문화관광부)**

- 콜라텍의 認·許可 및 施設基準 등 마련
 - 인·허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시설구조를 자의적으로 하여 화재요인 많고 대형 인명사고 우려 및 청소년 탈선조장
 - 관련법상 규제 및 육성 할 수 있는 근거마련
- 노래방의 刑事處罰 강화
 - 노래방에서 접대부 고용, 주류판매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유흥주점화 할 가능성 농후

- 청소년들도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판매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 병행 필요

○ 靑少年 文化空間 등 확보

-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공간 조성 적극장여
- 청소년을 위한 문화·체육 등 다양한 행사개최, 참여유도

□ 非行靑少年에 대한 制裁 마련(靑少年보호위원회)

- 飲酒 靑少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청소년이 음주를 당연시하므로 社會奉仕命令 등의 제재로 遵法精神을 提高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警覺心 고취 필요
- 티켓다방 區分基準이 모호하여 단속에 대한 구체적 사실 口證키 어렵고, 처벌근거 미흡
 - 19세미만의 다방종업원 차 배달행위 금지근거 필요
 - 휴게음식점(다방)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삭제되므로 청소년의 탈선 온상화 우려

□ 自治團體長의 不法根絶 의지 제고(자치단체)

- 認許可 주무관청의 강력한 團束意志 표명
- 지방재정 확보와 불법업소 난립에 대한 自治團體長의 認識轉換 艱요



서울 靑少年保護 特別綜合對策

서울 特別市

I. 推進背景

- '99.6월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및 최근 인천의 무허가호프집 화재사건 등을 계기로 유해환경정비를 포함한 청소년 대책전반에 대해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시점으로서
- 21세기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긴요한 실정임.
- 이제까지의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찾기보다는 단발적, 일과성 단속·감시위주로 유해업소의 근절 등에 한계가 있었으며 관련기관간 산발적, 분산추진으로 실효성 미흡과 관·업 유착 등 문제
- 수요자인 청소년 입장에서 대책을 접근하기 보다 성인이나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접근함으로써 청소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용공간 제공 등 대책이 상대적으로 소홀
- 이에 따라 기존 시책의 문제원인을 정밀분석·평가하고 효과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추진이 긴요
- 시민과 유관기관의 공동 노력에 의해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안전보호 도모

청소년문제의 현황

□ 흡연·음주·가출 등 청소년 탈선행위의 급증

- 고3남학생의 흡연비율이 41.6%로 세계최고 수준
 - 미국 28.2%, 영국 20.5%, 일본 26.2%('97 세계보건기구)
- 연간 10만명의 가출청소년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로 유입
-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연령 하향화
 - 청소년 범죄증가율 : 109%('94)→125%('95)→148%('96,'97)
 - 14세~17세 범죄 : 소년범죄의 54.7%('93)→63.6%('97)

□ 청소년 유해환경의 급속한 확장과 접촉기회의 일상화

- 현재 서울에 유흥음식점 309개, 단란주점 4,464개소가 주거지역에 산재
- 절반가량의 청소년이 유해간행물 접촉 경험
 - 포르노 잡지 40%, 포르노비디오 54%, 인터넷음란물 77%

□ 청소년 관련 정책추진의 미흡

- 청소년 보호업무의 체계적 추진 미흡
 -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로 이원화, 그 외 18개 부처·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
 - '99.7.1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이관
- 지방자치단체의 유해업소 단속실적 급감
 - '94년 업소당 3.8회 → '98년 업소당 1.3회

-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청소년 유해·안전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일부 이완 사례

II. 推進方向

- 기존 시책을 분야별로 정밀 원인분석을 실시,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장·단기 대응방안 마련
- 시민단체, 교사단체, 학부모 등과 유관기관이 협력체제를 갖추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고 올바른 청소년보호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 추진
- 청소년 안전 위해요인은 최단시일내 제거하고, 청소년 유해환경은 특별단속을 통해 조속히 가시적으로 정비하면서 재발 방지
- 청소년 유해환경 및 안전위해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병행
- 청소년을 대책의 주체로 보고 청소년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책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완
- 청소년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충
- 성공적인 대책추진을 위해 예산·조직·인력 등 가용 행·재정 수단 집중
-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이 추진상황을 정기점검하고 대책내용을 지속보완 발전

Ⅲ. 靑少年 有害業所 및 安全 危害業所 整備

1. 實態 및 問題點

<靑少年 有害業所 정비>

가. 단속체계상의 문제점

□ 단속인력의 절대 부족

○ 靑少年 有害가능 業所 : 총 31,885개

- 식품위생법 관련業所 : 17,239개

무 허 가	허가취소	영업정지	불법 업종변경	호프집· 소주방	단란주점	유흥주점
319	1,527	3,356	261	3,788	6,400	1,588

※ 식품접객業所 : 133,858개소의 12.8%

- 靑少年 이용業所 : 13,831개

비디오방	게임방	노래방	무도장	무도학원	콜라텍	전화방	만화방
899	4,586	5,769	12	236	77	127	2,125

- 직업소개소 : 815개

○ 단속인력

┌ 식품위생 業所 : 373명 (1명당 497개 業所)

└ 靑少年 이용業所 : 100명 (1명당 138개 業所)

□ 단발성, 일과성 단속으로 효과 미흡

- 시는 월 2~3회 기동단속 (시민단체 참여, 구간 교차단속)
- 구는 월 1~2회 지역업소 단속

□ 단속의지의 결여

- 구 단속전담부서의 취약
 - 구조조정과정에서 위생과 또는 단속계 폐지
 - ※ 25개구중 21개구가 위생과를 타과와 통합
- 상당수 자치구에서는 주민과의 마찰이 따르는 단속업무 기피 경향
- 단속공무원도 단속에 따르는 격무, 신변위험 등을 이유로 소극적 업무수행
- 단속후 처분과정에서 청탁·압력이 빈번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낮고 담당공무원의 사기 저하

□ 야간·취약시간대 단속 미흡

- 접객업소가 야간 영업업소이고, 특히 청소년 대상업소는 일요일에 성업중
- 야간 단속활동이 미약하고 토·일요일 단속반 운영은 거의 전무 상태

※ 시 주관 시민단체 합동의 구간교차 단속에 거의 의존

나. 단속과정상의 문제점

□ 청소년 출입여부의 확인 곤란

- 청소년 여부는 주민등록증, 학생증 등 확인으로 가능하나 신분증 제시에 불응하거나 미소지시 확인에 한계
- 주민등록번호 등의 구술이 있더라도 경찰에 협조하여 확인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실효성 미흡

□ 단속시 신변위협 등

- 무허가, 퇴·변태업소 등의 업주, 종업원이 폭력조직원이거나 폭력조직 또는 토호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어 단속시 공무원에게 신변 위협 등 사례 빈번
- 취객들의 욕설 등 단속방해

□ 단속정보의 사전 누출·전파

- 단속공무원과 업소의 유착으로 단속계획 사전 누출
- 밀집지역은 단속이 시작되면 인접업소에 연락, 출입문 폐쇄

□ 무허가·영업정지중 영업업소는 비밀영업으로 적발에 어려움

- 불법업소는 주로 단속 사각시간대인 심야에 영업
- 간판을 소등하거나 이중문을 설치하고 단골손님 또는 삐끼 등을 이용하여 손님유인接客

다. 행정처분의 집행 및 실효성 확보상 문제점

- 행정처분시 청탁·압력에 의해 무혐의 처리하거나 과징금으로 가볍게 처분하는 사례 빈번
- 업주가 사법적 대응시 행정처분의 실효성에 한계
 - 허가취소,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 영업주는 행정처분 「집행정지」 가처분신청과 「행정소송」의 방법으로 영업을 계속
 -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에서는 대부분 본안판결시까지 집행정지 판결
 -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청소년 주류제공의 경우 「재량권 한계를 일탈한 위법처분」으로 판결하는 경향
 - 행정절차 및 소송진행 등에 따른 행정수요만 창출되는 결과가 되어 담당공무원이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사기 저하
- 허가취소·영업정지의 경우 규정악용시 사실상 합법 영업가능
 - 영업정지 업소가 업종변경후 신규영업(유흥주점→단란주점)을 할 경우 합법적으로 6개월까지 계속 영업 가능
 - 허가 취소된 장소의 경우 동종 영업허가를 6개월까지 해주지 않는 규정이 있으나 업종변경시에는 무방비
 - 업종변경후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더라도 6개월까지는 고발만 가능(미등록업소는 영업정지 불가)

라. 무허가 업소에 대한 강제집행에 어려움

- 단전·단수는 위반업소 건물이 위법건축물인 경우 가능하나 업소의 급수 및 전기사용계약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고, 「불법행위」보다 생존권이 우선한다는 판례 등을 이유로 해당 기관에서 조치 비협조
- 간판철거는 각 구청에 전문인력, 장비 등이 확보되지 않아 철거가 어렵고 파손시 손실보상 문제 발생으로 일선 공무원이 기피
- 형사고발의 경우도 실정보다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어, 불법영업주는 벌금보다 불법영업에 의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않음.
- 불법업소의 안내게시문이나 주방설비 등 영업시설의 봉인 등에 대한 훼손행위도 벌금만이 부과되므로, 모든 법적행위가 정기적 요식행위로 끝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음.

<청소년 및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>

□ 내 장 제

- 건축법상 천장과 벽체는 불연재를 쓰도록 되어 있으나,
- 복도와 계단은 불연재를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

□ 대피시설

- 지상 5층이상, 지하2층 이상 건물은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4층이하 건물은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음.

- 비상계단, 비상구가 있더라도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해 두어 비상시 활용하기가 어렵고 대부분 평소에 잠구어 둬.
- 창문은 소음차단이나 실내인테리어를 위해 폐쇄되어 비상대피시 활용이 곤란
- 노래방, 비디오방, 게임방 등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대부분 대피유도등, 누전차단기 등 전기안전시설 미비
- 소화기, 비상벨 등 소방장비도 구비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
- 종업원들에게 화재예방의 중요성은 물론 소화기 사용법, 비상대피 요령 등 소방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.

2. 市民이 主導하여 靑少年 有害・危險環境 除去

- 民・官 協力 監視・公開・申告體制 運營 -

가. 기본방향

- 시민이 주도하는 감시체제와 공개 및 신고제도를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과 안전 위해요인을 가시적으로 제거
- 유관기관은 인력・장비・예산・법규상 조치 등 적극 지원
- 이를 위해 시・구에 민관합동의 「청소년보호위원회」를 설치・운영 하고 산하에 「청소년 보호감시단」을 설치・운영

나 추진방향

- 청소년 보호감시단을 '99.11.29부터 운영하되
- 유해업소·안전위험업소를 단기간내 정비하기 위해 2000년 2월말까지는 특히 행정력을 대폭 보강하여 일제 점검·정비하는 특별감시단을 운영
- 유해·위험업소 등이 대부분 정비되는 2000년 3월부터는 일상시·정비체제로 지속 운영

< 단계별 감시단 운영 >

1단계(일제정비)	⇒	2단계(상시정비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99.11.29~2000.2.29 · 유해·위험업소 일제정비 · 민간단체+행정력 대폭 보강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000. 3. 1부터 · 일상감시·정비 · 민간단체 + 유관기관

다. 청소년 보호위원회

- 서울시 청소년 보호위원회
 - 기존의 청소년 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유관기관, 시민단체, 교직원 단체, 청소년단체, 학부모단체, 시의원 등으로 대폭 보강하여 구성·운영(30명이내)

○ 구 성

- 공동위원장 : 민간대표, 행정1부시장
- 위 원 : 청소년단체, 시민단체(새마을, 바르게, 자유총연맹, YMCA, YWCA, 보이스카웃, 걸스카웃 등)
학부모단체, 교총·전교조 등 교사단체,
퇴직교사, 업주대표, 시의원, 검찰, 경찰,
교육청, 한전, 국세청, 서울시 관계관 등
- 간 사 : 체육청소년과장, 보건위생과장

○ 기 능 : 청소년 보호대책 협의 및 조정

□ 자치구 청소년 보호위원회 - 서울시 조직에 준하여 구성·운영

○ 구 성

- 위 원 장 : 민간대표, 부구청장
- 민간단체, 교사단체, 업주대표, 구의원, 유관기관 등 20인이내

○ 기 능 : 자치구 청소년 보호대책 협의·조정

라. 청소년 보호감시단

□ 서울시 청소년 보호감시단

○ 구 성

- 단 장 : 민간대표, 문화관광국장
- 반 편 성 : 6개반 66명 정도로 구성(반당 11명 3일 1회 근무)
 - 민 간(6) : 시민단체, 교사단체, 청소년단체, 퇴직교사 등

- 공무원(5) : 시공무원 1, 경찰 1, 소방 1, 교육청 1,
공익근무요원 1 (반당)

※ 시 공무원은 전부서에서 차출

○ 기능 및 방법

- 청소년 유해업소 및 안전 위해업소 계도·점검(매일)
- 불시 합동으로 업소 순회 점검
- 점검결과 위법사항은 소관 기관별로 조치

○ 장 비 : 차량, 휴대폰, 현장조치 장비, 카메라, 게시물 등

○ 단속공무원 : 사법경찰권 부여 (전원)

○ 민간감시원 : 유니폼과 모자·완장지급, 명예감시원증 발급

단속원 실명제(단속기록제)

- 업소점검시 업소에 출입기록부 비치
- 일시, 반원성명, 단속내용, 점검결과 등 기재

○ 대상업소 : 청소년 유해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소

- 식품위생업소 : 소주방, 호프집, 민속주점, 카페, 콜라텍,
유홍주점, 단란주점 등
- 가 무 업 소 : 노래방, 비디오방, 무도장 등
- 놀 이 업 소 : 게임방, 전화방, 오락실, 만화방 등
- 기 타 : 숙박업소, 유흥업소, 직업소개소 등

중점정비 대상

- 무허가 또는 영업정지중 영업
- 상습 법규위반 및 퇴·변태 조장행위
- 특히 청소년 출입이 많거나 청소년 불법 고용
-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 판매
- 비상구 미설치·폐쇄 또는 물건 적치
- 스티로폼, 우레탄폼 등 유독 가연성 내장재 사용
- 불완전한 전기·가스시설 및 인화물질 등 방치

일반정비 대상

- 중점 정비대상 외 청소년 유해 및 안전위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위법행위

□ 자치구 청소년 보호감시단

○ 구 성

- 단 장 : 민간대표, 생활복지국장
- 반 편 성 : 160개반 1,760명 이상
(1일 구당 2개반, 3일 1회 근무)
 - 반원구성은 시 감시단에 준하여 편성
- ※ 강남·서초·중구·영등포·종로구 등 대상업소가 많은 구는 구당 3~5개반으로 편성·운영

○ 기능 및 방법

- 시 감시단에 준하여 운영(매일)
- 구역별 전담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기간을 주기로 담당구역 변경
- 중점 정비대상 업소는 매일 점검 등 사후관리 철저
- 일반 정비대상 업소는 예방차원의 순회 점검 실시

○ 단속원 실명제 : 시 감시단과 동일

○ 장 비 : 휴대폰, 현장조치 장비, 게시물, 카메라 등

○ 단속공무원 : 사법경찰권 부여 (전원)

○ 민간감시원 : 유니폼과 완장지급, 명예감시원증 지급

마. 적발업소에 대한 조치

□ 불법업소·안전미비 업소 등에 대해 강력 처벌

○ 업 주 : 형사처벌 원칙 (검찰·경찰)

- 업주가 현장에 있는 경우는 현행범으로 경찰이 즉시 연행 조치
- 업주가 현장에 없는 경우는 관할경찰서에 인계, 책임 조치

○ 업 소

- 무허가 업소 : 폐쇄·봉인, 게시물 게첨 및 간판철거(구)
- 영업정지중 영업업소 : 허가취소(구)
- 기타업소 : 가장 무거운 처분(구 : 영업정지원칙)

- 무허가·불법용도변경 건축물 : 단전·단수(한전·상수도본부)
- 세무조사 실시 (국세청, 구)
- 소방법규 위반 : 고발 및 영업정지

○ 건 물 주

- 불법용도 변경의 경우 :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
 - ※ 2층 근린생활시설에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경우 등
- 재산세, 종합토지세 중과(17배까지), 취득세 5배 추징
- 소방법규 위반 : 고발 및 개수명령

□ 불법업소·안전 미비업소

공개

- 대 상 : 무허가·영업정지 업소, 비상구 미설치 또는 폐쇄, 방화벽 제거, 유독가연성 내장재 설치업소, 인화물질 방치업소 등
- 내 용 : 업소명, 위법내용, 시민이용 자제 협조 등
- 방 법
 - 서울시 홈페이지 등재
 - 업소명단을 다중이용장소 등에 비치
 - 구·동 민원실, 은행, 지하철역, 우체국, 학교, 목욕탕 등
 - 반회보 게재 및 CATV 방영
- 명 의 : 시·구 청소년 보호위원회

○ 시 기

- 무허가·영업정지 업소, 비상구 미설치 업소는 즉시
- 시정 가능한 업소는 시정명령후 시정기간내 미시정시 즉시

□ 시민불매운동 전개 : 청소년단체, 시민단체, 소비자보호단체 등 합동

※ 행정처분 등 과정에서의 청탁자 명단공개 검토

바. 시민신고제 운영

□ 서울시 홈페이지에 신고방 개설·운영

- 가칭「청소년 유해업소 인터넷 시민신고방」('99.12. 1)

□ 시·구에「청소년 유해업소 시민신고센터」설치·운영 서울시 신고센터

- 설치장소 : 문화관광국(특별정비기간중에는 시 대책본부상환실),
120 민원전화

- 신고대상

- 무허가, 영업정지중 영업업소
- 청소년 불법고용 및 불법출입허용 업소
- 퇴폐·변태영업 조장 업소
- 청소년에게 주류·판매행위 업소
- 비상구 폐쇄, 실내인화물질 방치 등 화재위험업소
-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 또는 안전상 위험 업소

- 신고방법 : 전화(120, 신문고전화), FAX, 우편, 방문, PC통신

- 접수사항 조치 : 신고내용에 따라 감시반 즉시 출동 또는
유관기관에 즉시 조치토록 통보
- 자치구 신고센터 : 시 신고센터에 준하여 설치·운영

※ 명예식품위생감시원, 청소년위원, 예비군 동대장 등을
신고요원으로 위촉

신고포상금 지급

- 위반유형에 따라 2~10만원(향후 30만원까지)

※ { 식품위생업소 : 식품진흥기금 활용(현행)
 { 기타업소(PC방, 콜라텍 등) : 포상금제도 신설

신고제도 홍보

- 언론기관 보도
 - 보도자료 제공 (신문박스기사, TV 기획방송 등)
- 홍보 유인물 제작, 다중이용장소·시설에 부착
 -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, 버스, 구·동사무소 게시판
 - 아파트게시판, 은행·우체국·학교 등
- 지역단위 홍보 : 반회보 게재, 지역 CATV 방영 등

3. 靑少年 有害 · 安全危害業所 一齊整備

가. 정비방향

정비단계	정비대상	정비방법	추진기간
1단계	· 무허가 · 영업정지업소	· 시·구 특별정비팀 운영	· '99.11.29
일제정비	· 청소년 불법고용 · 출입업소	· 시·구에 정비대책본부 설치 · 운영	· ~ 2000. 2.29
	· 상습법규 위반 및 퇴 · 변태업소	· 소방특별안전점검팀 및 기동점검팀 운영	※ 안전위해업소 정비
	· 청소년에게 주류 · 담배판매 업소		소방특별점검 : '99.11.2~12.11
	· 비상구 미설치 · 폐쇄 · 물건 적치 업소		기동점검팀 : '99.12.12~2000.2.29
	· 유독가연성 내장재 사용업소 등		
↓			
2단계	· 특별정비행위 재발업소	· 민간주도 시·구	· 2000.3.1부터
일상감시 · 정비	· 기타 청소년 유해 · 안전 위해 업소	감시단 운영	

※ 일상감시 · 정비 단계에서 특별정비대상이 증가한 경우
수시 특별정비 시행

나. 유해업소 일제정비

- 시·구 대책본부 및 특별정비단속반 운영 -

<시 대책본부 및 합동단속반>

□ 단속체제 : 민간단체·시·유관기관 합동

○ 대책본부 및 상황실 : 서울시에 설치

- 구 성 : 본부장(보건복지국장·문화관광국장) 및 민간단체·
유관기관

- 인 력 : 22명(민간 6, 서울시 12, 경찰 2, 교육청 2)

※ 근무형태 : 격일 근무

※ 인력은 시 전부서에서 차출

- 기 능

· 시 합동단속반 및 구 대책본부 지휘

· 일일 정비대상 업소선정 및 적발시 조치지시

· 단속 및 사후관리 상황유지

· 언론 및 대시민 홍보

※ 상황판 제작·설치 및 관리

□ 합동단속반 편성·운영

○ 기 능 : 시 전역을 대상으로 중점 대상업소 기동 단속

○ 인 력 : 12개반 132명 (1일 4개반 44명 근무, 3일 교대)

※ 시 청소년 보호감시단 6개반 66명을 포함하여 구성

- 반별구성 : 시 3(반장, 운전기사 포함), 경찰 2, 교육청 1
공익근무요원 1, 민간단체 4

- 경 찰 : 무술유단자 등 기동대 요원
- 민간단체 : 새마을, 바르게살기협의회, 자유총연맹 등
- 시공무원 : 전 부서에서 차출

※ 공무원 전원 사법경찰권 부여

- 장 비 : 차량 1대(12인승), 휴대전화, 철거, 봉인기구,
카메라, 게시물(무허가 또는 영업정지 표시) 등

○ 단속방법

- 일일 단속업소 선정

- 대책본부에서 당일 지정하여 단속출장직전 단속반장에
밀봉 교부(1차 도착지 및 집결시간 고지)

- 현장단속

- 반장이 반원을 대동, 단속대상업소 인근 지정장소에 도착
하여 밀봉된 봉투를 개봉한 후 지정시간에 맞추어 단속대상
업소 전격단속 개시
- 경찰관은 우선 업주 또는 책임자를 연행 및 입건 조치
(관할서에 인계)
- 기타 단속요원은 단속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봉인·폐쇄
조치 및 게시물 부착후 대책본부로 복귀

다. 단속후 조치

- 단속결과(증거자료 포함)를 기록하고 해당 자치구 대책본부에 조치 토록 통보(익일 09:00까지)
- 적발업소 명단과 조치내용을 언론사에 통보 (FAX)
- 구 대책본부에서는 최단시일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확행
- 단속사항을 지속 확인하고, 무허가·영업정지중인 업소는 즉시 서울시 인터넷에 적색업소 등재 (언론기관에도 통보)

<구 대책본부 및 합동단속반>

□ 단속체제 : 민간단체·구·유관기관 합동

- 구 대책본부 및 상황실 : 자치구에 설치
 - 구 성 : 본부장(행정관리국장, 생활복지국장) 및 유관기관, 시민단체 합동
 - 인 력 : 22명 (구 12, 경찰 2, 교육청 2, 시민단체 6)
 - ※ 근무형태 : 격일 근무
 - ※ 인력은 구 전부서에서 차출
 - ※ 공무원 전원 사법경찰권 부여
 - 기 능
 - 구 합동단속반 지휘
 - 일일 정비·단속대상 업소선정 및 조치지시
 - 단속 및 사후관리 상황유지

- 시 대책본부에 상황보고
- 지역 홍보
- ※ 상황판 제작·설치 및 관리

□ 합동단속반 편성·운영

○ 인 력 : 2,805명

※ 구 청소년 보호감시단 160개반 1,760명을 포함하여 구성

- ┌ 1일 3개팀(11명) × 3개조 × 20개구 : 3일 1교대근무
- └ 1일 5개팀(11명) × 3개조 × 5개구 : 3일 1교대근무

- 1개팀당 : 구 3(반장, 운전기사 포함), 경찰 1, 공익근무요원 1,
민간단체 6

※ 구 공무원은 전부서에서 차출

※ 강남·서초·중·종로·영등포구는 5개팀 운영

○ 장비(팀당) : 차량 1대(12인승), 휴대전화, 철거·봉인기구,
카메라, 게시물 등

○ 단속방법

- 일일단속업소 선정

- 대책본부에서 당일 지정하되 일정지역에 구 단속반을 집중 배치

※ 사전 보안유지 철저 (시 단속방법에 준하여 시행)

- 현장단속

- 대상업소에 지정된 시간에 전격 투입, 단속 실시
- 불법행위 적발시는 시 단속에 준하여 시행

□ 단속후 조치

- 단속결과는 즉시 구 대책본부에 보고 (증빙자료 등 제출)
- 대책본부에서는 소관부서에 지시하고, 소관부서는 즉시 고발 또는 행정처분 조치 시행
- 위법행위 조치 : 시 단속반 조치와 동일하게 시행

라. 청소년 안전위해업소 소방안전확보

□ 특별 합동안전점검 실시 - 「다중이용시설 안전센서스」

- 기 간 : '99.11. 2 ~ 12.11 (40일간)
 - 대 상 : 노래방, 비디오방, 단란·유흥주점, 호프집, 소주방, 오락실, PC방, 콜라텍, 전화방, 지하층 식품위생업소 및 대형음식점, 사회복지시설, 보육시설, 기타 화재취약 다중이용업소
 - 점 검 반 : 소방·건축·전기·가스·시민단체 합동
 - 민간점검반원 : 완장지급, 명예점검원증 발급
- ※ 소방본부 주관, 19개 소방서별로 책임 편성·운영

○ 중점 점검사항

- 비상구 미설치 폐쇄 또는 물건 적치행위
- 스티로폼, 우레탄폼 등 가연성 내장재 설치
- 소화기 미설치 또는 미작동
- 이동식 난로 사용 또는 가연성 물건·인화물질 등 적치
- 전기·가스시설 안전상태
- 종업원에 대한 화재예방, 전기·가스안전 취급 요령, 재난시 긴급 조치요령 교육 등

○ 점검반 실명제(점검기록제)

- 업소점검시 업소에 출입기록부 비치
- 일시, 반원 성명, 점검내용, 점검결과 등 기재

○ 점검결과 조치

- 화재위험 건물 폐쇄, 불법시설물 제거 조치
 - 비상구 미설치 또는 폐쇄시 비상통로 확보
 - 계단 또는 비상구의 적치물 제거
 - 스티로폼, 우레탄폼 등 유독가연성 내장재 및 인화물질 등 제거
 - ※ 법규개정시까지 행정지도로 제거, 법개정후 강제철거
 - 기타 불법시설물 (방염 처리안된 실내장식물 등) 제거
 - ※ 시설 개수시(내장재 및 방화시설 보강) →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
- 해당업소 영업정지 및 영업주 고발

- 전기·가스 등 불안전시설은 즉시 보완 조치
- 업주·종업원에 대해 특별교육 실시
 - 화재예방, 시설점검 요령, 소화기 사용법, 전기·가스 안전관리 요령 등

- 점검결과를 「데이터베이스」로 구축
- 위법업소 명단 및 위법내용 공개

- 사후관리 철저
 -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을 실명으로 지정, 책임 관리
 - 불법·위험요인이 완전 시정될 때까지 지속 점검·관리

□ 상설 기동점검반 운영

- 기 간 : 특별 합동점검 완료후 계속 (12.12부터)
- 구 성 : 소방, 건축, 한전, 가스공사 합동
 - ※ 소방본부 주관, 19개 소방서별로 책임·편성
- 방 법 : 업소별로 순회 예방점검 및 지도
 - 점검반 실명제 실시
- 조 치 : 미흡사항 즉시 시정조치 및 위법행위 행정처분·고발

4. 不法根絶을 위한 制度改善 推進

가.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

□ 불법업소에 대한 단전·단수 근거 마련

-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법 등에는 근거가 없으며, 수용가별로만 단전·단수가 가능

⇒ 식품위생법, 공중위생법 등에 단전·단수 근거 신설
업소별로 단전·단수가 가능토록 상수도조례,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급규정 개정

□ 원스트라이크 아웃(One Strike Out)제도 도입

- 청소년 불법 고용(유흥接客원) 업소, 불법 출입허용 업소, 주류판매 업소는 적발시 과징금 처분에 그치고 4차 위반시 허가취소 가능

⇒ 1회 적발시 곧바로 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
원스트라이크 아웃(One Strike Out)제도 도입
(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령 개정)

□ 동일장소에 유사업종 신규허가 제한

- 허가취소된 경우 동일장소에 동종업종은 6개월간 신규허가 금지되고 있으나, 업주명의 및 업종을 변경하여(단란주점→일반음식점) 계속 영업하다가, 6개월 이후에는 신규허가를 취득하여 정상영업이 가능

⇒ 허가취소된 경우 동일장소에서는 1년간 동일업종 뿐만 아니라 유사업종의 신규허가도 금지(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)

□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 소주방, 호프집, 카페, 민속주점 등을 청소년 출입금지 업종으로 새로 지정

○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 개정

□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 신설

○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개정

□ 콜라텍을 건전한 청소년 휴식공간으로 육성

○ 현재는 범외업종으로 주류판매, 부킹알선 등 변태영업시 단속에 한계

⇒ 제도권업종으로 흡수, 시설기준, 영업자 준수사항 부여 및 단속 근거 확보

□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를 출입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

○ 청소년 불법출입 허용시 업소와 업주는 처벌하고 있으나, 당사자인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선도프로그램이 없음.

⇒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제도 도입(청소년보호법 개정)

- 법으로 보호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「19세 미만」으로 통일(관계 법령의 연령기준 통일)

나. 안전위해업소 정비

- 소방·방화시설 완비 증명발급 대상 확대

- 호프집·소주방·게임방·콜라텍·전화방·노래방·비디오방 등 청소년 출입업소가 「소방·방화시설 완비증명」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.

⇒ 피난·방화시설(계단실의 내장재 포함)을 강화하고,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 「소방·방화시설 완비증명」 발급대상으로 포함토록 하여 소화기, 비상조명등, 비상구, 비상벨 등 소방설비를 완비토록 함(소방법 개정).

- 피난·방화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에게도 감독권 부여

⇒ 현재 구청장에게 있는 피난 및 방화시설에 대한 감독권을 소방서장에게도 동시 부여

- 과태료 부과 강화

-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, 비상구 및 피난통로 등에 적치물 방치시 현행 최대 50만원 → 500만원

□ 업주 및 종사자 소방교육 훈련 강화

-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인 청소년 출입 시설은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가 상당수
 - ⇒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청소년 출입 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에 관계없이 정기적인 소방교육 및 훈련을 의무화 「119 체험현장」을 설치·운영하여 학생·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단체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

□ 건축물의 통로·계단 및 실내 마감재 제한

- ⇒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500m²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도 포함시켜 대상을 확대하고
- ⇒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, 실내마감재의 사용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국한(스티로폼, 우레탄폼 사용금지) 다만,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급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난연3급도 허용.

□ 비상구 시건장치 자동개폐 시스템 도입

- 대부분의 다중이용업소에서 무전취식후 도주 및 도난방지 등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고 영업
 - ⇒ 화재발생시 감지기에 의해 자동 개방되거나 카운터에서 스위치(버튼)로 수동 개방할 수 있는 비상구 시건장치 자동개폐 시스템 제도화

□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

- 현행 5층 이상 건축물에 비상계단 확보 의무화
 - ⇒ 신축건물의 경우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(건축법 개정)
 - ⇒ 피난방향 야광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

□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

- ⇒ 창 폐쇄행위 금지 및 상시 개폐 가능토록 유지
- ⇒ 점포주택의 옥상출입 제한 행위금지 (화재시 옥상 대피가능)

IV. 靑少年 利用空間 및 프로그램 開發 · 擴大

1. 實態 및 問題點

- 방과후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
 - 호프집이나 소주방 등에서 생일파티나 모임을 하는 경우 빈번
 - 유흥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청소년이 최근 2년사이 5배이상 증가
- 1,210명('96) → 6,345명('98)
 -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마땅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음.
 - ※ 청소년의 휴일 여가 활용실태('97 청소년 개발원 조사)
- 텔레비전·비디오 보기 27%, 별다른 일 없이 쉬 11%

- 이용가능한 기존 시설도 청소년을 위해 개방하고 있지 않음.
 - 대다수 학교의 경우 방과후 폐쇄
 - 관리상 어려움, 파손 등을 우려
 -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은 성인중심으로 개방
- 청소년 시설이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시스템이 없음.

2. 基本方向

- 청소년이 마음놓고 뛰어 놀수 있고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용공간과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충
- 청소년 관련단체 및 전문가·민간기업·유관기관이 적극 참여하여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
- 우선 민관합동으로 청소년이 선호하는 콜라텍 등 건전한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·활용하고 기존 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추진
- 콜라텍 등 민간인이 운영하는 건전업소를 적극 육성·지원
-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이 선호할 수 있도록 수준을 대폭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이 참여토록 함

3. 推進計劃

가. “서울 유스 테크”(가칭) 설치 운영

- 명칭은 추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결정

□ 추진방향

- 1단계로 2000학년도 수능시험 이후 및 '99년도 겨울방학기간중 청소년 이용이 가능하도록 12개소의 “서울 유스콜라텍”을 시범 운영하고
- 2단계로 연중 이용이 가능한 상설 시설 확보
 - “서울유스콜라텍”, “서울유스노래방”, “서울유스게임방”, “서울 유스음악감상실” 등
- 청소년 단체 및 시 보유 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시설물 임차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
- 청소년이 선호하도록 민간운영시설 수준으로 현대화하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기획·진행 등에 직접 참여하는 체제로 운영

□ 단계별 추진

<1단계 운영> - '99.11.17~2000.2.29

- 대상시설 : 12개소

- YMCA회관(2개소) : '99.11.17부터 운영(수능일, X-마스, 졸업시즌 등)

- ※ 시는 예산지원, YMCA는 설치 및 운영

- 시립청소년 수련관(10개소) : '99년 12월중 운영
 - 강남(수서), 양천(목동), 영등포(문래·당산), 관악(신림), 동작(대방), 중구(수표), 노원(상계), 금천(가산), 중랑(면목),
 - ※ 시설여건에 따라 매일 또는 주말 개장
- 운영내용 : 우주볼, 싸이키조명, 노래방기기 등 시설설치, 비디오 자키(VJ) 등 진행자 활용
- 수용인원 : 시설별 100~500명 수용가능(12개소 3,000명)
- 운영단체 : 시립청소년수련관 운영단체, 서울YMCA 등
- ※ 소요예산 : 600백만원(시설비 450, 운영비 150)

<2단계 운영> - 2000. 3. 1부터 계속(상설)

- 대상지역 : 청소년이 많이 모이고 교통이 편리한 20개소 내외
 - 두산타워 주변(동대문), 성신여대입구(성북), 신촌로타리(서대문), 노량진역 주변(동작), 신림사거리(관악), 제일생명뒷편(서초), 신천동 먹자골목(송파), 어린이대공원 주변(광진), 연신내(은평), 화곡동(강서), 노원역 주변(노원) 등
- 시설확보 및 운영
 - 시설비·임차비·운영비 등은 시에서 지원
 - 청소년관련 단체에서 운영

- 연예인 청소년 자원봉사단 을 구성하여 자원봉사 출연

- 연예인협회와 협조

※ ① 장충체육관 · 잠실실내체육관 등 대규모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(경기가 없는 날) 및 ② 청소년관련 상품(음료 · 문구 · 운동기구 · 음반 등) 제조 · 판매기업 등과 협조,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별도 추진

<3단계 운영> - 생활권별로 연차 추진

- 대 상 : 민간건물 임차사용 또는 공공시설 활용
(구민회관, 사회복지관, 문화체육센터, 학교, 동사무소 등)

- 방 법 :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

- 자치구에서 장소 및 운영단체 선정후 시에서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

※ 건전한 콜라텍 업소 육성 · 지원

- 제도권 업종으로 흡수하고 시설개수비 등 용자 지원

나. 기존시설 개방 및 이용활성화

□ 학교시설 개방 (초 · 중 · 고교 - 2,453개소)

- 교육청과 협조, 개방 및 활용계획 수립 · 시행
 - 조명, 체육시설 등 정비 · 보수
- 관리비, 시설보수비 등 시비 지원

□ 공공시설 개방

- 대 상 : 구민회관(22), 청소년 복지시설(24), 공원(1,246), 동사무소(522), 문화·체육시설 등
- 기존 활용실태 전면 재검토, 활용계획 수립·시행
 - 특히 공휴일 및 방과후 시간대에는 청소년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

□ 공원에 청소년 선호시설 적극 설치

- 대상시설 : 길거리 농구대(2000년 25개소), 롤러블레이드장, 인공 암벽 등
- 한강시민공원, 근린공원, 어린이 공원, 가로공원 등 기존공원 정비·활용
- 향후 청소년 전용 공원 신설 추진

다. 청소년 심신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·운영

추진방향

- 서울 인근의 예비군훈련 시설들을 적극 활용하여 체험위주의 청소년 심신수련장으로 개방하고 이용활성화
- 시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시범운영 후 연차 확대

□ 예비군훈련장을 청소년 캠프장으로 개방

- 대상시설 : 예비군훈련장 23개소(강남 10, 강북 13)
 - ※ 시가지전투훈련장 17개소
- 개방기간 : 3~10월, 토·일요일(1박2일)
- 활용방법
 - 연병장 : 캠프장, 다중 놀이 및 운동(캠프파이어, 사물놀이, 축구 등)
 - 시가지훈련장 : 서바이벌게임, 극기훈련
 - 운동시설 : 농구, 탁구, 등산 등
 - 강 당 : P.C게임, 문화프로그램 등
- 운영방법
 - 청소년단체 또는 학교주관으로 프로그램 운영
 - ※ 시설 및 장비 등 시비 지원
- 추진계획
 - 2000년부터 일부를 시범운영 후 연차확대

□ 청소년 야영 및 극기훈련장 활성화(교육청시설 부지 활용)

- 대상시설 : 학생교육원 3개소(여학생교육분원, 대천, 대성리),
야영수련장 3개소(퇴촌, 모현, 서울대공원), 대성의집 분원
- 운영방법 : 야영 및 극기훈련, 합숙훈련, 문화교실 등
(1박 2일 또는 2박 3일)

- 이용인원 : 연 30만명
- 시설 및 프로그램 보강 : 시·교육청 협의추진

□ 청소년 심신수련장 확대 설치

- 축령산(가평 행현리) 야영수련장
 - 면 적 : 104,464평
 - 운영방법 : 합숙훈련, 극기훈련, 산행, 문화교실운영 등
(1박 2일 또는 2박 3일)
 - 수련인원(예상) : 연 10만명
 - ※ 시설계획 : 야영지 4개소(6,400평), 대활동장 1개소,
소활동장 3개소, 취수장·저수조 등 부대시설
- 천마의 집(남양주시 호평동)
 - 운영방법 : 등산 및 수련코스로 운영(1박 2일)
 - 수련인원 : 연 1,000명

라. 청소년 문화·수련활동 확대 및 다양한 이벤트 제공

□ 청소년 문화·수련활동 확대 및 다양한 이벤트 제공

- 활동분야 : 해양캠프, 겨울수련, 유적탐방, 청소년축제 등
 - ※ 청소년 국제교류, 도농간 교류사업 등 2000년 신규 추진

□ 청소년 전용광장 확대 운영 : 4개소('99) → 7개소(2000년)

○ 한강시민공원, 여의도공원 등에서 상설놀이기구 대여, 공연 등 활용

※ 대학로, 보라매공원, 뚝섬지구 등 3개소 확대 운영

□ 청소년 이동수련광장 확대 운영 : 2개소('99) → 3개소(2000년)

○ 5톤트럭 개조 음향·영상장비 탑재, 공연장소 등을 찾아가서 종합 놀이마당, 생활체육, 과학탐험 등 제공

※ 청소년을 찾아가는 프로그램 적극 개발

□ 청소년 문화·체육 이벤트 개발·운영

○ 청소년 문화이벤트

- “서울청소년 음악제”, “서울청소년 예술전”

“서울청소년 문학상”, “서울청소년 연극제”, “광화문축제”(가칭)

- 5월 청소년의 달 또는 방학기간, 졸업시즌 등 청소년이 거리에 많이 나오는 시기에 개최

- 청소년 단체, 언론기관, 민간기업 등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 하거나 또는 민·관 합동으로 개최·정례화

○ 청소년 체육이벤트

- “서울청소년 체육대회(종목별)”, “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” 등

- 5월 청소년의 달 및 수시(걸거리 농구대회)
- 시장기 또는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
- ※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시민공모제 시행
 -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, 우수프로그램 시비지원

마. 청소년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

- 시설이용지도 제작·배포
- 프로그램 안내책자 제작, 각급 학교에 수시 제공
- 시·구에 청소년 시설이용 및 프로그램 안내센터 운영
 - 서울시 청소년전용 사이트 개설
 - "Girls & Boys"(가칭)
 - 전용안내전화 설치

바. 청소년 이용공간(Green Zone) 확충 종합계획 수립

- 추진부서 : 문화관광국
- 수립시기 : '99.12월말까지
- 추진방법 : 실태조사 실시후 유관기관, 시정개발연구원, 전문가, 청소년, 교사, 학부모,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여 수립

사. 청소년 통행금지(제한) 구역 관리

- 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주관,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조사 실시(업종, 출입자 현황, 영업행태 등)
- 해제·완화 또는 추가 지정·강화여부를 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심의·조정

V. 推進日程

- 종합대책 확정 : '99. 11. 24.
- 시·구 단속반 활동개시 : '99.11.29부터
-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확보 : '99.11. 2부터
- 시·구 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: '99. 12월중
※ 조례개정전까지는 임시구성 활용
- 불법·안전미비업소 공개 : '99. 12.1부터
- 시민신고제 운영 : '99. 12. 1부터
- 업소 자율정비 추진 : '99. 11. 25부터
- 제도개선 추진 : '99. 12월부터
- 서울유스테크 설치 운영 : '99.12월중
- 학교 공공시설 개방 : '99.12월부터
- 청소년 시설이용·프로그램 정보제공 : '99.12월부터
- 청소년 그린존 확충 종합계획 수립 : '99.12월까지

추진체제 보강

□ 推進狀況 點檢・評價

○ 서울 시

- 분야별 추진상황을 매월 평가 실시
 - 「서울시 청소년보호위원회」 주관
 - 보완대책 강구·시행
- 현장점검 병행

○ 자 치 구

- 자치구 청소년 보호위원회 주관
- 서울시 추진상황 점검·평가에 준하여 실시

□ 業所自律 淨化・整備

- 업종별 협회주관으로 자율정화 추진
- 업종별 협회 지도하에 자율정비반 운영
 - 정비지도·점검, 업주교육 및 정비 실시 평가
- 자율정비 및 우수업소 인센티브 부여
 - 청소년 모범업소 지정(인증) 및 표창·격려
 - 시설개수 비용 용자 (식품진흥기금 활용)

□ 區 靑少年業務 專擔部署 補強

- 구 담당과에 청소년업무 전담팀 확보

관련부처 협조사항

부처·기관	협 조 사 항	비 고
국 방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예비군 훈련장을 주말에 청소년캠프장으로 활용토록 협조 ○ 예비군 동대장을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요원으로 활용 협조 	
행정자치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관련 법령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소방·방화시설 완비증명발급대상 확대 [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] (현행) 완비증명대상에 "호프집, 소주방, 게임방, 콜라텍, 전화방, 노래방, 비디오방" 미포함 (개선) 유흥, 단란주점과 함께 포함 ②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[소방법시행령 제4조의3 제1호 가목] (현행) 소화기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(개선)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 동시 설치 의무화 ③ 소주방·호프집 등의 업종에 대한 피난·방화시설 강화 [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3 제2호] (현행) 소주방, 호프집 등의 건축물 내장재는 규정 없음 (개선) 소주방·호프집 등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시설토록 하는 규정 추가 ④ 과태료 부과 강화 [소방법 제119조] (현행) 과태료 상한선이 50만원임 (개선)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대폭 인상 	

부처·기관	협 조 사 항	비 고
	<p>⑤ 업주 및 종사자 소방교육훈련 강화 [소방법 제8조의4] (현행)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을 임의사항으로 규정 (개선) 의무사항으로 규정</p> <p>⑥ 비상구 시건장치 자동개폐시스템 도입 [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호] (현행) 소방·방화시설의 종류에 미포함 (개선) 기타시설의 내용에 비상구 시건장치 자동개폐시스템을 추가</p>	
교 육 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구 합동단속반 및 청소년보호감시단 구성·운영협조 (시·구 대책본부 및 시·구 합동단속반 포함) ○ 초·중·고 학교시설 개방(2,453개소) ○ 청소년캠프 및 야영시설 확충 등 청소년 이용공간 확대(천마산, 가평 행현리, 대성리 등) ○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및 이용공간 홍보 (청소년 이용시설 지도, 책자 배포지원) 	<p>-1단계 331명 ('99.11.29~2000.2.29)</p> <p>- 2단계 172명 (2000.3.1~)</p>
문화관광부	<p>○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법률</p> <p>① 보호대상 청소년 연령을 「19세미만」 으로 통일 [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18조 제3호] (현행)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 (개선) 청소년보호법과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개정</p> <p>② 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형사처벌 [음반·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30조] (현행) 노래연습장의 변태영업(주류판매, 접대부 고용)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없음 (개선) 노래연습장 변태영업 형사처벌규정 추가</p>	

부처·기관	협 조 사 항	비 고
청소년보호 위 원 회	<p>○ 청소년보호법 개정</p> <p>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도입 [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] (현행) 청소년 불법고용·불법출업·주류판매업소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(개선) 1회 적발시 허가를 취소하고 영업장을 폐쇄</p> <p>② 소주방·호프집·카페·민속주점의 청소년 출입금지 [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] (현행) 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되어 있으나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(개선) 출입금지 업소로 지정</p> <p>③ 출입금지 업소 출입청소년에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[청소년보호법] (신설) 출입금지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 도입근거조항 신설</p>	
보건복지부	<p>○ 식품위생·보건위생관련 법령개정</p> <p>① 동일장소에 유사업종 신규허가 제한 [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2호] (현행) 퇴·변태 등으로 허가취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영업허가 제한 (개선) 단서 규정 신설 - 퇴·변태,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장소에 대하여는 그 장소에서 1년간 동일업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의 신규허가 제한</p>	
건설교통부	<p>○ 건축법령 개정</p> <p>① 건축물의 통로·계단 및 실내마감재 제한 [건축법시행령 제61조] (현행)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할 항목에 비상통로·계단 미포함 (개선) 제5호를 신설하여 비상통로·계단 추가</p>	

부처·기관	협 조 사 항	비 고
	<p>② 피난·방화시설에 대해 소방서장에게도 감독권 부여 [건축법 제70조] (현행) 비상계단·통로·내장재, 방화구획 등에 대하여 건축허가처리시 소방서장과 사전협의 하지 않음 (개선) 건축허가처리시 소방서장과 사전협의</p> <p>③ 피난시설 설치기준 강화 [건축법시행령 제35조 제1항] (현행) 5층이상은 피난계단 확보 의무화 (개선) 3층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피난계단 확보 의무화</p> <p>④ 창 폐쇄행위금지 및 점포주택의 옥상출입 제한행위 금지 [건축법시행령제35조] (현행) 언급 없음 (개선)· 창폐쇄를 금지하여 상시 개폐가능하게 유지토록 하고 · 화재시 옥상대비가 가능하도록 점포주택 의 옥상출입제한을 금지 시킴</p> <p>⑤ 피난방향 야광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 [피난·방화·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다목] (현행)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의무화 (개선)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및 피난방향 야광피난유도선 설치 의무화</p>	

부처·기관	협 조 사 항	비 고
검 찰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 유해 및 안전위해업소 업주 및 책임자 강력처벌 ○ 단속공무원 사법경찰권 부여 ○ 단속활동 방해 및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자 처벌 	- 1,056명
경 찰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구 합동 단속반 및 청소년보호감시단 요원 차출 (시·구 대책본부 및 시·구 합동단속반 포함) ○ 청소년 유해 및 안전위해업소 업주 및 책임자 연행 및 처벌 조치 ○ 단속활동 방해 및 단속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자 처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단계 331명 ('99.11.29~2000.2.29) - 2단계 166명 (2000.3.1~)
국 세 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구로부터 통보받은 청소년 유해 및 안전위해업소 세무조사 등 세무관리 강화 	
한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유해업소 단전요청시 단전 조치 	
가스안전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방 합동점검요원 차출 협조 	